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CERD)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토론회

- 일시: 11월 23일(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남윤인순 의원실, 은수미 의원실, 서기호 의원실, CERD NGO 보고서 제출 단체(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및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여성인권포럼, 한국 이주여성인권센터, 희망을 만드는 법 희망법)

토론회 순서

▷ 사회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인사말

남윤인순(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은수미(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서기호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 발제

CERD 최종 견해 및 이행 과제

장서연(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이행방안 토론

장현석 서기관(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박제성 사무관(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장석준 과장(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석원정 소장(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우다야 라이(이주노조/민주노총)

우삼열 소장(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목차

[인사말] 남윤인순 의원, 은수미 의원, 서기호 의원	----- 5
[발제] CERD 최종 견해 및 이행 과제 / 장서연(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13
[토론]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와 이행과제 검토 / 박제성 사무관(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33
장현석 서기관(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현장 배포
장석준 과장(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 39
‘난민 분야’ 토론문 /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 46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 분야’ 토론문 / 석원정 소장(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 51
이주노동자 관련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이행방안에 대한 토론문 / 우다야 라이(이주노조/민주노총)	----- 57
2012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와 출입국관리 문제 / 우삼열 소장(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 61
[참고자료]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최종 견해	----- 66
한국 내 이주민인권에 대한 유엔인권기구의 기존 우려 및 권고사항	----- 74

<인사말>

남윤인순 의원

은수미 의원

서기호 의원

[인사말]

남윤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남윤인순입니다.

먼저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를 실행하기 위한 토론회를 함께 열어주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법센터 어필,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 여러분들과 은수미 의원님, 서기호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권고가 갖는 의미와 이행과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NGO와 정부, 그리고 입법기관에서 함께 논의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위원회의 이번 권고가 전혀 '새롭거나 낯설지 않다'는 점과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고 종합적인 권고'라는 점은 우리사회에서 이주여성과 아동,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족, 난민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정의규정 마련, 인종차별의 범죄화, 차별금지법 제정, 인종 혐오 규제의 필요성, 고용허가제 개선, 이주여성 보호, 난민인정 절차의 개선 등은 반복적으로 권고되는 사항임에도 그동안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 비율은 이미 2004년에 10%를 넘기 시작하였고, 여성가족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당시 1년간 다문화가족 내 부부폭력 발생률은 69.1%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인정범위가 협소하여 성적 괴롭힘, 언어폭력과 인격모독, 유기 또는 무책임한 방치로 인한 피해를 실제 가정폭력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가출과 이혼중용, 취업강요와 임금갈취 등도 이혼소송에서 폭력이나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정받지 못해서 체류자격을 상실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안대로 한국인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도 결혼이주여성에게 법적인 체류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내 상임위원회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가족위원회에 유엔의 협약과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소위원회인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정책 심사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

다. 여성의 국적취득·변경·보유, 자녀의 국적과 관련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 보장, 차별 금지법 제정, E-6비자 입국 여성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의한 착취금지 조치, 외국인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등은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협약 및 권고사항 중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그런만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진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현장과 연구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입법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1차 다문화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이 계획에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발제와 토론을 맡아 귀한 시간을 내주신 분들과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토론회에서 이 그 어느 때보다 심도 깊고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은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게 1978년이니, 벌써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사항의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점들이 많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여전히 비준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더욱 그렇습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인 총 140여만 명이고, 이중 비전문 인력 약 49만 여명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16만 여명이 열악한 작업환경과 인권사각지대에서 단순 노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주노동자들이 매우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 일상적인 폭행과 성희롱 등 심각한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야간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주노동자가 추락사고사 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많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해온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도 등 일련의 외국인 인력정책제도와 출입국관리법 등의 잘못된 관행과 법제도의 개선은 뒤로 한 채, 반복적인 토끼몰이식 단속과 야간단속으로 해마다 끊임없이 수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 2007년 서울 고법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노동3권의 제약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는 불법체류를 이유로, 체류자격을 가진 노동자에게는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한 강제퇴거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노동3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5년이 넘도록 대법원은 판결을 회피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이것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무시한 채 사업주의 이윤만을 위한 이주노동정책이 이루어지는 한 절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8월 말에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권을 제한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관련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고, 3개월 후에 과연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사업장 변경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브로커 개입 방지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가, 그리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권고의 내용들이 이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계획했던 토론회를 일단 연기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이명박 정부가 틈만나면 선전하고 강조하는 진정한 국격에 누가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비준했거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여러 이주 관련 국제인권협약들에 부합하는 수준의 개선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이번 19대 국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노동3권과 근로권을 온전하게 향유할 수 있고, 차별 없는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서기호입니다.

1996년에 이어 또 다시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한층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축하할 일이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규모는 2008년 34만 명에서 2011년 55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2020년에는 다문화가족 100만 명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바야흐로 우리사회는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변화되는 국면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와의 공존의식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다문화 공존'에 대한 찬성비율이 36%로 74%에 달하는 유럽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문화가족이 처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을 들여다보면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의 가구 비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에는 집단 따돌림, 정체성 혼란, 사회적 차별로 인하여 사회심리적 부적응 및 학습장애 등을 경험하고 있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최근 발생했던 한 몽골 청소년에 대한 서울출입국사무소의 강제퇴거명령 결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들은 다문화사회와 이주민 인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식 수준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한국의 이주민 인권에 대하여 상당히 진일보된 내용의 최종견해를 발표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권고와 이행과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 출입국관리소법 개정 및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힘을 보태어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주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남윤인순 의원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의 은수미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보다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이주민 인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들이 잘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와 이행과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와 이행과제

장서연(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이라 함)은 1965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 채택되었고 1969. 1. 4. 발효되었다. 협약 당사국수가 173개국(2010년 기준)이다. 대한민국은 1978. 12. 5. 협약에 가입하여 1979. 1. 4.부터 발효되었다.

협약은 전문과 3부 25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협약 제1조 제1항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는 협약국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와 인종간의 이해증진 정책을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추구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협약국의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선전과 고무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5조는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해야 할 만인의 권리를 서술하고 있다. 사법기관에서의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정치적 권리, 당해 계약국 국경 이내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권리, 국적 취득권, 혼인 및 배우자 선택권, 단독 및 공공재산 소유권, 상속권, 사상·양심·종교·표현·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특히 근로, 직업 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은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당하고 알맞은 보수 등에 대한 권리,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 주거에 대한 권리, 공중보건, 의료, 사회보장 및 사회봉사에 대한 권리,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문화적 활동에의 균등 참여에 대한 권리,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하는 권리 등이 그 내용이다.

제6조는 계약국의 법원을 통하여 인종차별행위로부터 만인을 보호하고 구제하며,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구할 권리, 제7조는 수업, 교육, 문화 및 공보분야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항하고 협약의 제 목적과 원칙을 전파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계약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 당사국의 협약 이행 감독을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주요 기능은 인종차별철폐협약 당사국 보고서 심사, 당사국에 대한 제안 및 권고, 개인진정 접수 및 심사를 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당사국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국내 관련법령을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하고, 사법부도 동 협약을 재판 근거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민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가 인종차별철폐협약이다.

2.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와 이행과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15차 및 제16차 합동 정기보고서를 2012년 8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심사하여 2012년 8월 30일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하였다.

1)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1) ‘인종차별’에 대한 정의 마련- 헌법 제11조 제1항

위원회는 당사국이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시민들에게 차별로부터의 충분한 보호가 보장된다는 추정 하에 협약 제1조와 조화를 이루는 인종차별의 정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재고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¹⁾

협약 제1조 제1항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협약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인 “인종, 피부색, 가문, 민족적 또는 종족적 기원”을 명문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국정부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차별금지 사유는 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어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유에 의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도 금지된다면서 동 조항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헌법 제11조 제1항과 여러 개별법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을 보장하고 인종차별을 금지하기에 충분하다는 당사국의 단언에 주목하면서도, 협약 제1조와 연결되는 인종차별의 법적 정의 부재에 재차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2007년 최종견해에서도 “대한민국이 이 협약의 제1조 제1항에 따라 차별금지사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차별의 정의를 검토할 것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바 있다.²⁾

한국정부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재차 권고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1조 제1항의 차별금지사유가 예시조항이므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와 관련하여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³⁾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의 차별금지사유를 헌법의 차별금지사유에 명문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인종차별 정의 마련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1조와 조화를 이루는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포함하고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30호(2004년)에서 권고한 시민과 비시민간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국내법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⁴⁾

나아가 위원회는 일반권고 30호(2004)에서 권고한 대로 시민과 비시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국내법에 포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4년 「비시민권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일반권고 30호」를 채택한 바 있다.⁵⁾

1) 2012년 인종 위원회 최종 견해(CERD/C/KOR/CO/15-16) 6항.

2) 2007년 인종 위원회 최종견해(CERD/C/KOR/CO/14) 10항

3) 헌법재 소 1999.12.23. 98헌마363

4) 2012년 인종 위원회 최종 견해(CERD/C/KOR/CO/15-16) 6항

5) 일반권고는 인권조약에 따라 만들어진 조약위원회가 조약의 조문을 유권해석한 것이다. 조약감시기구가 수행

위원회는 “모든 사람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는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사회권 규약, 자유권 규약, 그리고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상기하고, 비국적자, 특히 이민자, 난민, 비호신청인에 대한 인종혐오가 동시대의 인종주의의 주요 근원 중 하나라는 것과 이러한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차별, 인종혐오 및 인종주의자의 관행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인종주의, 인종차별, 인종혐오, 및 불관용에 관한 세계회의”에서의 더반 선언을 상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비시민권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주제 토론을 조직하여 인종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의 비시민권자에 관한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동 협약 제5조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는데 있어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할 당사국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들 중 선거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자에 한정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인권은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들을 국제법 하에서 인정하는 정도까지 향유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간의 평등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⁶⁾라고 하면서, “시민권 또는 이민자 자격에 따라 구별되는 대우는 만약 구별의 기준이 동 협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합법적인 목적에 따르지 않거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례적이지 않을 때, 차별이 성립된다.”⁷⁾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민 정책이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하여 개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효과를 갖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비시민권자들, 특히 비시민 노동자의 자녀와 배우자와 관련하여 다층적 차별에 관한 문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선언하고 있다.⁸⁾

위원회는 2007년 최종견해에서도 “대한민국이 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 향유에 있어 국제법 하에 인정된 정도까지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법적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바 있다.⁹⁾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회는 특히 이주민 인권에 주목하여 여러 구체적인 권고를 하고 있다.

(3) 차별금지법 제정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협약 제4조와 조화를 이루는 차별금지법이나 다른 포괄적인 입법의 완성과 도입에 신속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2009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E/C.12/KOR/CO/3),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C/KOR/CO/7)와 아동권리위원회(CRC/C/KOR/CO/3-4)가 동일한 권고를 하였음을 상기한다.¹⁰⁾

하는 해당 인권조약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인권조약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를 선언함으로 국제인권법의 구체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6) 인종 위원회 비시민권자에 대한 에 관한 일반권고 30호(2004) 3항

7) 인종 위원회 비시민권자에 대한 에 관한 일반권고 30호(2004) 4항

8) 인종 위원회 비시민권자에 대한 에 관한 일반권고 30호(2004) 8항과 9항

9) 2007년 인종 위원회 최종견해(CERD/C/KOR/CO/14) 14항

10) 2012년 인종 위원회 최종 견해(CERD/C/KOR/CO/15-16) 7항

위원회는 2007년에도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마련 및 채택을 위하여 신속하게 행동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¹¹⁾ 또한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17대 국회 때만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78002)을 발의하고, 18대 국회에는 정부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2007년 정부안은 “성적지향, 출신국가” 등 특정 차별금지사유가 입법예고안과 달리 삭제된 채 발의되어서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별도의 차별금지법안 의원발의로 17대(의안번호 178162), 18대(의안번호 1814001) 국회에 발의하였으나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각종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에 따라 신속하게 차별금지법을 입법해야 한다. 특히 여러 위원회에서 권고하였듯이 차별금지사유를 “성적지향, 출신국가” 등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모두 명시하는 안으로 입법해야 한다.

(4) 인종차별의 범죄화

위원회는 제4조에 대한 일반권고 제1호(1972년)를 상기하며 제2조와 제4조의 구속성을 재차 강조하며, 당사국이 형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범죄에 포함시키고, 인종차별을 범죄화하고, 침해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적절한 처벌을 규정하고, 인종차별을 가중처벌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포괄적인 입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¹²⁾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 (a)항은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이나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인종주의자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원조의 제공도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b)항은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금지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나 활동에의 참여를 의법처벌하는 범죄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협약의 당사국은 국가기관에 의한 인종차별을 금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종차별과 인종혐오를 선동하고 고무하는 행위,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는 일반권고를 통해 인종주의적 동기 및 목적으로 저지르는 죄는 엄중한 처벌이 허용되는 가중처벌 상황이 된다는 규정을 형법에 도입하라고 권고하고 있다.¹³⁾ 위원회는 2007년에도 “대한민국이 이 협약 제4조에 따라 인종적으로 유발된 범죄의 금지 및 처벌을 위한 세부적인 법률적인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¹⁴⁾

11) 2007년 인종 위원회 최종견해(CERD/C/KOR/CO/14) 13항
12) 2012년 인종 위원회 최종 견해(CERD/C/KOR/CO/15-16) 8항
13) 인종 위원회 비시민권자에 대한 에 관한 일반권고 30호(2004) 22항
14) 2007년 인종 위원회 최종견해(CERD/C/KOR/CO/14) 13항

(5) 인종차별 사건의 통계 부재 지적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한국사회에서는 “인종차별적 범죄행위에 관하여 특별 입법조치를 취하거나 인종적 동기를 가중적 사유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인종적 동기에 기인한 범죄가 역사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반 범죄행위 처벌 범위 내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인종차별의 선동이나 인종적 우월성에 근거한 선전 등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가능하다는 주장은 보호법익이 다르고, 실무상 집단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행정과 형사사법제도 운영에서의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31호(2005년)를 상기하며 인종차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적은 상황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이는 특히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의 부재, 피해자의 보상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 또는 인식의 결여 때문일 수 있다고 본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낮은 고소·고발 건수에 대하여 심도 깊게 분석하고, 그 차기 보고서에 관련 기관에 신고된 인종차별사건의 수, 고소·고발인의 국적과 법적 지위,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 및 기소 비율과 그 결과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¹⁵⁾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5년 「행정과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일반권고 31호」를 채택하였는데, 당사국은 인종주의, 인종혐오 행위에 관련된 고소, 기소 및 유죄 판결 뿐만 아니라, 보상이 가해자에 이루어지거나 공적 기금으로부터 국가 배상 계획에 의해서든지, 그러한 행위의 피해자에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포괄적 통계와 기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⁶⁾

위원회는 “한 국가에서의 인종차별행위에 관한 고소, 기소, 유죄판결이 부재하거나 극히 미비함. 이러한 통계는 일부 당사국들의 믿음과는 반하여, 반드시 긍정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부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들이 사회적인 비난이나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제한된 자원을 가진 피해자가 사법절차의 비용과 복잡성을 두려워하거나, 경찰 및 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의 부족, 또는 당국이 인종주의에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 충분히 경계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보노깃 후세인 씨 사건은 인종 차별 범죄에 대한 최초의 고소 사건이었지만 결국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 보노깃 후세인 사건은 인종차별이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 사유로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보여 준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종, 출신국, 종교 등 인종적 요소로 차별받았다며 제기된 진정이 2005년 32건에서 2010년에 64건으로 5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였다. 한편 ‘파키스탄·방글라데시 외국인에 의한 피해자 모임’ 등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에 기반한 인터넷 카페가 2010년 현재 10여 개에 이르는 등 온라인상 인종 차별 음

15) 2012년 인종 위원회 최종 견해(CERD/C/KOR/CO/15-16) 9항

16) 인종 위원회 행정과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종 에 대한 일반권고 31호(2005) 3항

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10월 한 달간 온라인 공간을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도 210건의 인종 차별 발언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점차 인종 혐오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고소 건수가 미약한 것은 위원회의 우려처럼 관련법이 미비하여 사람들이 인종 차별을 범죄로 처벌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인종 차별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다.

위원회는 협약의 당사국은 “구조적 인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전략이나 행동 계획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장기 전략은 구체적 목적과 행위 및 진행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전략들은 인종주의나 인종 혐오주의적 사건의 예방, 기록, 조사와 기소, 모든 공동체 내에서 그들과 경찰 및 사법제도와 관계에 관한 만족도의 측정 및 사법제도 내에 다양한 인종적 또는 종족적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채용과 승진을 위한 지침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인종주의 피해자의 사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자신의 권리를 종종 자각하지 못하는 가장 취약한 사회적 계층에 속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하고, “당사국은 검사 및 검찰 당국에게 모든 인종적 동기에 의한 범죄는 사회적 통합 및 사회 그 전체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인종주의적인 동기에 의한 경범죄를 포함한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기소하는 것의 일반적 중요성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⁷⁾

(6) 인종 혐오 발언 규제 의 필요성

위원회는 그 일반권고 제7호(1985년), 제15호(1993년) 및 제30호(2004년)에 따라, 당사국이 대중매체, 인터넷 및 소셜 네트워크를 감독하여 인종 우월주의적 사상을 유포하거나 외국인에 대하여 인종적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적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러한 행위의 주체들을 기소하고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한다.¹⁸⁾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는 예방적 측면을 염두에 두고 “당사국들은 모든 차별이나 이를 촉발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채택할 임무를 맡고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¹⁹⁾ 특히 “비시민권자들에 대한 증오연설이나 인종적 폭력 등 인종 혐오적 태도 및 행동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 비시민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특히 정치인, 공무원, 교육자 및 언론, 인터넷 및 여타 전자 통신 매체에 의해 사회 전체에서 표적화, 낙인화, 고정관념화 프로파일 하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한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²⁰⁾

한국은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에서 인종주의적 커뮤니티의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²¹⁾, 정부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한국사회에서 비시민

17) 인종 위원회 행정과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종 에 대한 일반권고 31호

18) 2012년 인종 위원회 최종 견해(CERD/C/KOR/CO/15-16) 10항

19) 인종 위원회 협약 제4조의 이행에 관한 일반권고 7호

20) 인종 위원회 비시민권자에 대한 에 관한 일반권고 30호(2004)

21) 현재 반외국인·반다문화를 표방하고 인터넷 상에서 활동 중인 단체로는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외국인노

권자를 향한 인종차별 증오발언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더욱 확산되고 노골적이 되어 가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채택되었을 때, 협약 제4조는 인종차별철폐의 중심이 되는 규정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인종우월주의나 증오에 바탕을 둔 모든 관념의 전파를 금지하는 것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양립한다고 본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2항에서 시민들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유권 규약 제20조에 의하면, 차별, 증오, 폭력을 촉발하는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를 옹호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 한다. 위원회도 최종 견해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인종 우월주의적인 사상을 전파하거나 인종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2)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개선

(1) 고용허가제 개선 권고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비자유형의 복잡성과 다양성,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권리의 제한, 최장고용기간과 관련하여 고용허가제를 재개정할 것을 권고한다.²²⁾

위원회는 고용허가제의 개정에 주목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차별, 착취, 낮은 임금, 임금체불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려하였다.

① 최장고용기간 제한의 문제점

위원회는 특히 한국이 이주노동자들의 최장고용기간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고 3개월 출국 후에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5년간의 지속적인 체류를 요구하는 영주권 취득을 사실상 봉쇄한다는 점에 더욱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시민권에 대한 접근은 특정한 비시민 집단이 시민권 또는 귀화에 대한 차별이 없을 것을 보장하고, 장기 또는 영구 거주자의 귀화에 있어 있음직한 장벽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을 근거로 한 시민권의 박탈은 국적에 대한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의 비차별을 보장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 위반이라고 선언하고 있다.²³⁾

② 사업장변경 제한의 문제점

최근에 사업장변경제도가 더 악화되어 2012. 8. 1.부터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구직

동자대책범국민연대' '외국인범죄 결연대' '다문화정책반대' '다문화반대범국민실천연대' '아리 시대' 이 있다.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단체로 된 조직도 있다. 대표적으로 2004년에 만들어진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를 들 수 있다.

22) 2012년 인종 위원회 최종 견해(CERD/C/KOR/CO/15-16) 11항

23) 비시민권자에 대한 에 관한 일반권고 30호(2004)

자에게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변경된 지침으로 인해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고용센터의 알선행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변경된 지침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에게는 구인 사업장의 연락처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점,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내에 근무처변경 허가를 얻지 못한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을 잃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변경된 지침은 결과적으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계약의 체결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임금 체불, 폭언·폭행,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사업장 변경 자체를 단념하고 자유의사에 반하여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변경된 지침은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도에 기인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이상 이주노동자의 직장선택의 자유, 계약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는 여전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업장변경 사유, 횟수, 신청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이동이 위축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사실상 노동착취와 강제노동의 현실에 놓여 있다. 따라서 사업장이동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²⁴⁾

③ 복잡하고 다양한 비자 종류의 문제점

현행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보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종류가 있다.²⁵⁾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국익이라는 핑계로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에 따라 이주민을 전문 인력 등 우수인재, 선진국 출신의 ‘재외동포’, 결혼이주민, 중국 및 구소련 동포, ‘단순기능인력’ 이주노동자 순으로 자의적으로 구분하고, 대상 간 경계를 뚜렷이 설정하여 상호간 이동을 막고, 각 대상의 권리를 차등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주민을 학력, 재산, 국적, 혈통에 따라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에 따라 입국 시에 세분화된 비자 유형을 부여하고, 자격과 권리에서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현재의 사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²⁶⁾

(2)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보장

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당사국이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²⁷⁾

24) 윤지영,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

25) 1. 외교(A-1) 2. 공무(A-2) 3. 협정(A-3) 4. 사증면제(B-1) 5. 관·통과(B-2) 6. 일시 체(C-1) 8. 단기 방문(C-3) 9. 단기 취업(C-4) 10. 문화예(D-1) 11. 유학(D-2) 12. 기 연수(D-3) 13. 일반연수(D-4) 14. 재(D-5) 15. 종교(D-6) 16. 주재(D-7) 17. 기업투자(D-8) 18. 무역경영(D-9) 18의2. 구직(D-10) 19. 교수(E-1) 20. 회화지도(E-2) 21. 연구(E-3) 22. 기 지도(E-4) 25의3. 비전문 취업(E-9) 25의4. 선원 취업(E-10) 26. 방문동거(F-1) 27. 거주(F-2) 28. 동반(F-3) 28의2. 재외동포(F-4) 28의3. 영주(F-5) 28의4. 결혼 이민(F-6) 29. 기타(G-1) 30. 관 취업(H-1) 31. 방문 취업(H-2)

26) 이한숙, 이주민 정책의 평가와 과제, 2012년 이주인권연대 정책자료집

27) 2012년 인종 위원회 최종 견해(CERD/C/KOR/CO/15-16) 11항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권과 가입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이주노동자의 간부 몇 명이 국외로 추방되었던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하였다. 나아가 위원회는 이 특정 문제에 관한 당사국의 보고를 요구했다.

협약의 당사국은 노동 조건 및 노동 요건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목적 또는 효과를 가져 오는 고용 규칙이나 관행 등 비시민권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고용허가서가 없는 비시민권자에게 직업 제공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일단 고용 관계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모든 개인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 및 고용의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²⁸⁾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05. 6. 간부와 조합원 대부분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임을 주된 이유로 하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Seoul-Gyeonggi-Incheon Migrants Trade Union, 이하 MTU)의 설립신고를 반려하였다. 이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2007. 2. 고등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이 있음을 인정하여 MTU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정부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관해 5년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NGO들은 대법원이 정치적인 이유로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최장기 행정사건이다²⁹⁾.

정부는 또한 MTU를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와 같은 태도에 기반하여 MTU의 위원장과 간부들을 표적 탄압해왔다. MTU의 초대위원장과 3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4대 위원장, 부위원장이 미등록 노동자라는 이유로 ‘표적단속(targeted crackdown)’하고 이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나 법원의 재판 진행 도중에 예고 없이 강제 출국시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 2008년 두 차례나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였다³⁰⁾. 정부는 최근 합법적인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5, 6대 위원장 미셸 카투이라(Michel Catuira)에 대해서도 허위취업이라는 이유로 체류비자를 취소시킨 후 출국명령을 내렸다.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규약들은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이 국적,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다. 2009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이주노동자에게 합법적 지위를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정부에 권고하였다.³¹⁾ 이러한 국제인권규약의 내용들과 위원회의 일반권고의 취지에 비추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행위는 명백히 협약 제5조 위반이다.

28) 인종 위원회 비시민권자에 대한 에 관한 일반권고 30호(2004) 33항, 35항

29) 정보공개청구(중합민원과-1292)에 대한 공개내용

30) 2007. 12. 14.자 유감표명 「인권위 조사 중 강제출국은 유감」; 2008. 5. 16.자 유감표명 「인권위, 법무부 강제 거 집행에 유감표명」

31) 2009년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20항

(3)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권리 보장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완전히 누릴 수 있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이 적절한 생계, 주거, 의료서비스와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권고한다.³²⁾

위원회는 일반권고를 통해서도 비시민권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의 향유, 특히 교육, 주거, 고용 및 건강과 관련한 영역에서의 권리 향유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고, 공공교육기관이 당사국의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비시민권자와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에게 개방될 것을 보장하고, 초·중등 교육에서, 또한 고등 교육에의 접근 가능성과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한 비시민권자의 격리된 학교 교육과 비시민권자의 처우에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³³⁾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이주아동의 교육, 의료급여, 최저생계 유지 및 보육 등을 지원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1809641)이 18대국회 때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이다.

3) 미등록 이주노동자

위원회는 당사국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추방된 노동자의 수와 더불어 근로감독 중에 적발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 그들의 상황과 구금기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직된 고용 허가제 때문에 미등록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³⁴⁾

위원회는 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이 되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어떠한 서비스에도 접근을 향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일반권고를 통해 비시민권자의 강제퇴거 및 추방과 관련하여 당사국 관할권으로부터 비시민권자의 추방 또는 다른 형태의 이동에 관한 법률이 그 목적이나 효력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종족이나 민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비시민권자가 효과적인 구제조치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강제퇴거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그러한 구제조치를 효과적으로 구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보장하고, 비시민권자, 특히 장기 거주자의 경우에 있어서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를 불균형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강제퇴거를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³⁵⁾

한국은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범질서’를 명분으로 오직 단속과 강제퇴거의 대

32) 2012년 인종 위원회 최종 견해(CERD/C/KOR/CO/15-16) 11항

33) 인종 위원회 비시민권자에 대한 에 관한 일반권고 30호(2004) 29항 내지 31항

34) 2012년 인종 위원회 최종 견해(CERD/C/KOR/CO/15-16) 12항

35) 인종 위원회 비시민권자에 대한 에 관한 일반권고 30호(2004) 25항 내지 28항

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많은 경우 이전의 산업연수생제도, 현재의 고용허가제에서 규정한 사업장변경 제한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해 미등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여 미등록자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강제추방정책만을 고수함으로써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추방 과정은 매우 폭력적이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2008. 4. 8. 대전에서 중국인 이주민 여성 두 명이 출입국직원들에게 단속을 당하면서 폭행당하는 장면이 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어 출입국단속의 충격적인 실상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였고, 2008. 11. 12. 경기도 마석에서 수백 명의 경찰과 출입국직원들이 폭력적으로 120여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10여 명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미등록 이주민들은 출입국 단속/추방 과정에서 최소한의 적법절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법제는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인신보호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일반 행정처분 결정과정에서 처분 상대방에 대한 절차적 권리(이유부기·청문절차 등)를 보장함으로써 결정의 적정성을 담보하도록 한 「행정절차법」은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절차에서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³⁶⁾, 의료시설·복지시설과 같은 사인에 의한 수용까지도 법원의 개인구제절차를 마련한 「인신보호법」 역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된 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⁷⁾

또한 외국인보호소 구금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외국인보호소는 사실상 구금시설이지만 구금기간, 구금 절차와 관련하여 사법통제절차가 전혀 없어서 장기구금 등 남용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단속, 구금, 강제퇴거에 대한 법적 통제절차를 주요내용을 하는 「출입국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6982)」을 18대 국회 때 발의하였으나 개정이 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이다.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추방 중심의 정책을 지양하고, 이주민에 대한 단속/보호는 인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바 그 사유와 절차를 형사사법절차에 준하여 개정하고 사법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실상 구금시설인 보호소 구금을 최소화하고, 보호소 내 수용자의 처우 개선 등 보호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는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고 미등록 이주민들을 합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미등록 상태에서도 교육권, 의료접근권 등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36) 행정절 법 제3조 제2항 제9호

37)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4) 난민, 난민신청자, 무국적자의 상황

위원회는 당사국이 입국항에서도 공식적인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아무런 제약 없는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여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 난민과 난민신청자가 일할 권리를 누리고 그들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계, 주거, 의료서비스,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이미 권고한 바와 같이 (CRC/C/KOR/CO/3-4) 당사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자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³⁸⁾

위원회는 2013년 7월부터 발효되는 난민법 제정을 환영하고 당사국이 법무부에 국적난민과를 신설하고 지난 수년 동안 난민지위 인정건수를 증가시키며 이 분야에서 더 노력해 왔음에 주목하지만, 세계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난민 인정률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2년 9월말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자는 299명(법무부심사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의 결과로 인정된 경우 포함)에 불과하여 난민 인정률 자체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난민인정절차에서 공정성이나 투명성, 최소한의 적법절차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 난민심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통역관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의신청 절차인 난민인정협의회가 난민신청자에 대한 청문 절차 없이 2시간 만에 1백건이 넘는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등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적난민과가 신설되긴 하였지만, 2012년 5월말 심사 대기인원은 1,264명으로 집계되는 등 소수의 난민전담공무원 인력으로는 역부족이어서 난민심사에 심각한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난민신청서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수가 적고 2012년 5월 대기 중인 신청이 1,200건 이상이라 사실, 통역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난민위원회의 재심절차에 관련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여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난민심사기간은 장기화되는데, 난민신청자는 신청 및 소송단계에서 주거, 취업, 생계보조비, 의료서비스 등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개정된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허가제도의 절차는 매우 엄격하여 실제로 취업허가를 받은 난민신청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편 인도적 사유에 의한 체류를 허가 받은 자는 152명(2012년 9월말 기준)으로 난민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허가 외에 다른 처우규정이 전무한 상태이다. 그 결과 교육, 의료, 주거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난민지위인정절차가 국제기준에 부합되고, 신청심사 공무원의 추가 임명 등을 통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권고하고, 적법절차는, 특히 신청자들에게 통역을 제공하고 그들과 관련된 이의신청절차에서 그들의 청문권을 보장함을 통해, 전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38) 2012년 인종

위원회 최종 견해(CERD/C/KOR/CO/15-16) 13항

따라서 한국정부는 난민관련 국제인권법에 근거하여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하고, 난민 인정절차 기간 동안 난민신청자들이 주거, 취업, 생계보조비, 의료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인도적 사유에 의한 체류를 허가 받은 자에 대하여 난민에 준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5) 이주여성 보호

(1)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위원회는 인종차별의 성(gender)에 관련된 차원의 일반권고 25호(2005)³⁹⁾를 상기하며, 당사국이 별거와 이혼 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그리고 사후 체류허가 및 기타 조항과 관련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원회가 이에 관해 처음 권고했던 2007년 이후 별거 또는 이혼 이후 체류자격을 박탈당한 외국인 배우자 건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⁴⁰⁾

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보호에 대한 전차 권고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이혼 시에 이주여성이 체류를 허가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이혼을 원하는 이주여성들의 권리가 여전히 적절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이주여성들이 육아나 시부모 봉양과 같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전차권고인 2007년에도 “대한민국이 국제결혼 여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특히 한국인 남편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제결혼 여성이 이혼 혹은 별거하게 된 경우에 법적인 거주 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⁴¹⁾

그런데 한국정부는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결혼이주자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원칙적으로 혼인에 기한 체류연장신청 및 귀화신청 자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국인과의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현행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39) 위원회는 위 일반권고에서 “인종 이 성과 여성에게 항상 동 하게 또는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인종 이 여성에게만 또는 주로 여성에게, 또는 여성에게는 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는 성과 다른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상 들이 존재한다. 만약 공적이거나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성과 여성의 상이한 생활 경험에 대한 명확한 인정이나 이해가 없다면, 그러한 인종 은 발견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동 협약 하의 권리를 여성이 인종 없이 동 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들을 가능한 한 양적, 질적인 면에서 모두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 인종이나 종 의 기원에 따라 분류되고 그러한 인종이나 종 집단 내에서 다시 성(gender)으로 구분된 자료는 당사국과 위원회와 간과하고 다루지 않을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인종 의 형태를 명하고 비교하며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40) 2012년 인종 위원회 최종 견해(CERD/C/KOR/CO/15-16) 14항

41) 2007년 인종 위원회 최종 견해 17항

있는 결혼이민(F-6) 사증의 요건은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만이 해당한다. 따라서 만약 이혼을 하거나, 가정불화로 인하여 가출 등을 했다면 결혼이주여성의 안전한 체류는 위협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는 정책제언으로 이혼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체류자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퇴거당할까봐 배우자의 폭력행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와 헌법 제36조(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반하는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결혼 이주여성의 체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결혼을 한 경우에는 선의로 결혼한 것이면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였든, 한국인 자녀가 있든 없든, 한국인 부모를 부양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체류의 방법은 결혼이민자가 이혼을 한 경우 결혼의 선의가 없지 않는 한 모든 경우에 영주비자를 취득하게 하여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 이주여성이 원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귀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원회의 권고대로 결혼이주여성이 별거나 이혼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귀책사유 여부 및 입증에 의존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 가정폭력 피해자 등 보호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폭력, 성적 학대, 인신매매, 기타 다른 형태의 폭력의 외국인 여성 피해자들이 확신을 갖고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은 회복할 때까지 당사국 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받고, 그들이 원할 경우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⁴²⁾

한국정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에게 그 폭력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만약 폭력 피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면 체류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 또 형사절차를 통한 피해 사실이 입증되었더라도 피해 회복에 대한 제도적 절차를 보장해 주지 않아 권리 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사법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하다.

42) 2012년 인종

위원회 최종 견해(CERD/C/KOR/CO/15-16) 15항

(3) 인신매매

위원회는 당사국이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과 그 협약의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 방지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를 비준하고, 형법을 개정하고, 인신매매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허용하고 이들을 적절히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이 그러한 범죄 신고를 막지 않도록 보장하는 국내 입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행 E-6 비자제도를 재검토하고, 이에 관련된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통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⁴³⁾

이미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인신매매를 다루는 포괄적인 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우려하고, 인신매매와 성매매착취가 팽배하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다는 우려를 반복한 바 있다. 특히 E-6 연예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들과, 국제결혼 중개 업체들을 통하여 입국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하여, 이 여성들 중 많은 수가 인신매매와 성매매착취의 희생이 된다고 하는 정보를 접수하고 특별히 우려하였다. 또한 당사국 내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의 혐의로 기소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나아가, 당사국이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고 있지 않음에 우려를 표했다.⁴⁴⁾

이와 관련하여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전차 권고(CEDAW/C/KOR/CO/6)를 반복하면서, 한국정부에게 다음을 촉구하였다. a)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법을 제정하고, 형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인신매매를 범죄로 포함할 것; b) 외국인 여성을 선발하는 연예기획사의 현행 초기심사절차를 강화하고, E-6 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여성들이 성매매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이 일하는 업소들에 대한 효과적인 현장 감시 장치를 수립할 것; c) 외국인 여성들을 결혼중개자, 인신매매업자 및 배우자들의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및 여타 조치들을 취할 것; d) 성매매를 비범죄화하고 성거래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법을 포함한 성매매 관련 정책과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 e)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된 여성들과 소녀들을 보호, 지원하고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해 심화된 조치들을 취할 것; f) 여성의 성매매 착취를 억제하기 위하여 성매매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고, 성매매로 착취당한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재활 및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할 것; g)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부속서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할 것.

관련하여 법무부는 2012. 8. 13.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43) 2012년 인종 위원회 최종 견해(CERD/C/KOR/CO/15-16) 16항

44) 여성 위원회 최종견해(CEDAW/C/KOR/CO/7)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및 ‘인신매매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각종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여 인신매매의 처벌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척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의안 번호 1901143). 그러나 형법 개정안은 기존 “약취·유인·매매” 행위의 제한적 해석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고,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규범인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인신매매방지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신매매’⁴⁵⁾의 다양한 행위 태양에 비하여 너무 협소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범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형법 개정안에 위 국제규범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수단행위가 추가되어야 한다.⁴⁶⁾

이주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마련된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811027)이 18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이다. 동 법안은 현행 「형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포섭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인신매매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신매매의 정의를 폭넓게 구체화하고⁴⁷⁾,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체류 특례조항을 두고 있었다.

6)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정의 확대

위원회는 당사국이 당사국의 영토 내에 있지만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통합시키기 위하여 외국인 사이의 결합이나 인종간 결합을 포함하도록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통합의 부재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그러한 가족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촉구한다.⁴⁸⁾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21일 제정되어 2008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2조).

45) 동 의정서에서는 “인신매매”란 “...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체적 폭력 또는 다른 형태의 강, 유, 사기, 기만, 직권 용 또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기타 금전적 보상이나 이 을 수수하여, 개인을 모집, 이동, 은, 또는 인계받는 행위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3조).

46) 소라미, 한국의 인신매매 관 법제의 실태 형사 사법적 대 방

47) 인신매매란 “성, 강제노동, 장기적출, 강제구 를 목적으로 폭행, 협, 위계, 위력, 그 에 이 에 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한 지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모집·선운반은·인계하거나 인계 받는 행위 또는 성, 강제노동, 장기적출 를 목적으로 19 미만의 아동, 사 을 하거나 의사 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 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 가 있는 자(이하 “아동 ”이라고 한다.)를 모집·선운반은·인계하거나 인계받는 행위”로 정의 함(제2조).

48) 2012년 인종 위원회 최종 견해(CERD/C/KOR/CO/15-16) 17항

그런데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 규정하고 있어(동법 제2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다문화가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로 이루어진 가족(부부와 아동), 난민 가족, 외국인 유학생과 그 동반 가족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 다문화가족의 정의가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에 한정되어 두 외국인끼리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과 같은 다른 형태를 배제하고 있음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여, 그들이 당사국의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방해하고 특히 아동들과 외국인 배우자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사실상 차별적인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을 우려하여 다문화가족 정의를 확대하라고 권고하였다.

<토론문>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와 이행과제 검토**
- **난민 분야 토론문**
-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 분야’ 토론문**
- **이주노동자 관련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이행방안에 대한 토론문**
- **2012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와 출입국관리 문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와 이행과제 검토

박제성(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15차 및 제16차 합동 정기보고서를 2012년 8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심사하여 2012년 8월 30일 '2012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 견해'를 채택한 바 있음

동 최종견해상의 법무부와 관련된 이행과제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 '인종차별'에 대한 정의 마련

위원회는 인종차별에 대한 정의를 마련할 것을 재차 권고하였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동조항은 차별금지 사유를 한정된 규정이 아니라 예시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인종, 피부색, 가문, 민족적 또는 종족적 출신'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근거없는 차별도 헌법상 금지됨

다만, 향후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함에 있어 협약 제1조에 규정된 인종차별의 정의를 충분히 고려할 예정임

○ ‘차별금지법’ 제정

2007년과 2011년에 제출 또는 의원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국회의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된 바 있음

정부는 2007년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이 폐기된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검토를 지속하고 있음. 또한, 2012년 3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을 추진과제에 포함시켰음. 이에 따라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임

○ 인종차별의 범죄화

위원회는 제4조에 대한 일반권고 1호(1972)에 따라 제2조와 제4조의 기속성을 재차 강조하며 형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침해의 경중에 비례하는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는 등을 촉구하였음

정부는 향후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며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할 계획임

○ 인종혐오 발언 규제의 필요성

위원회는 당사국이 대중매체, 인터넷, 사회 네트워크를 감독하여 인종우월주의적 선동이나 외국인 혐오 발언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적발하고, 기소하고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였음

정부는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년~2017년)을 통하여 외국인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 편견 등이 미디어를 통해 유포·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 또한 방송, 영상, 미디어 분야 등 콘텐츠 창작자·제작자 대상 교육을 통한 문화다양성 감수성 증진 및 일반시민 참여 상시 모니터링 실시할 계획임(문화부 등)

○ 복잡하고 다양한 비자종류의 문제점

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현행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다소 복잡하고 다양한 종류가 있음. 이는 체류외국인의 입국목적, 체류유형이 다원화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외국인 및 기타 정책대상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정책과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쉽고 간명한 체류자격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의미가 있음. 향후, 체류자격에 관한 깊이 있는 검토·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국내·외 이민정책 환경변화와 새로운 직종·직업

등을 반영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체류자격의 구분 원칙과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법적 지위(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위해 체류자격 개편을 추진할 예정임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직된 미등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권고하였음

정부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시행 중이며,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실태점검 등을 통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참고로,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는 불법체류단속의 패러다임을 다변화하고 불법체류자 은신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권을 명문화 등 추진 예정임

○ 난민, 난민신청자 등의 상황

위원회는 난민인정절차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난민과 난민신청자들이 일할 권리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계, 거주, 보건, 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음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년 7월 시행예정임. 난민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난민인정 제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는 난민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난민전담 부서 신설, 난민관련 예산 확보 등으로 난민업무 인프라 보강을 추진 중에 있음

난민법이 시행되면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직업훈련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사회보장과 기초생활보장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이주여성 보호

위원회는 별거와 이혼 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후 체류허가와 기타 조항을 고려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음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법 제25조의2)하여 결혼이민자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다른 법률의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해 주어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구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또한, 2011. 12. 1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신설하여, 기존

의 국민의 배우자 이외에도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와 국민배우자의 사망·실종 및 이혼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나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배우자에 대해서도 체류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음

정부는 향후에도 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임

○ 인신매매

위원회는 현행 E-6 제도를 재검토하고, 이에 관련된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통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음

정부는 예술홍행(E-6) 자격 연예인들에 대한 성매매 강요, 알선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증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성매매 강요 등 불법행위 전력이 있는 공연기획사 등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외국연예인 초청을 제한하였으며('11. 11.), 초청한 외국연예인 중 불법체류 또는 무단이탈한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공연기획사 등에 대해 최대 1년 간 외국인초청을 제한하였음('11. 8.)

아울러,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이 피해구제 절차 등을 밟기 위해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있음

정부는 인신매매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임

운영순 과장(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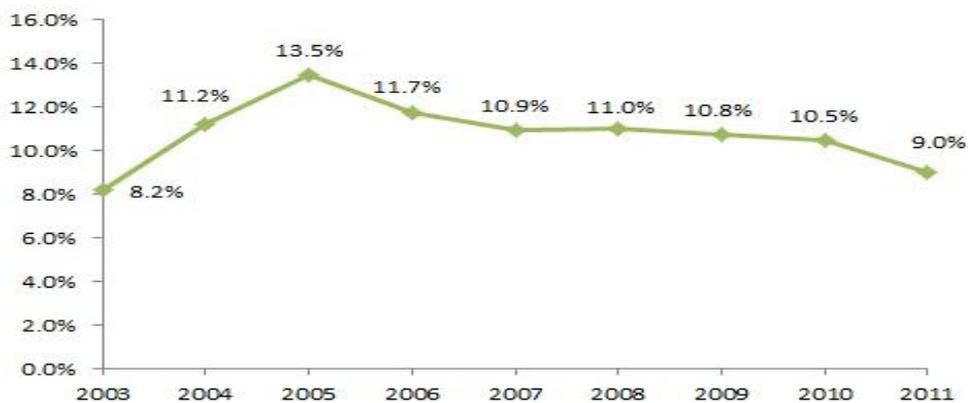
----- 현장 배포 -----

다문화가정의 해체 증가에 따른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방안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 장석준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초반 해도 전체 결혼 중 1%대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전체 결혼의 3.5%를 차지하던 국제결혼은 비율은 2005년에는 13.5%에 달했다. 2004년 이후 2011년 현재까지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 중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더 이상 예외적인 결혼 형태가 아니며, 일반적인 결혼 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전체 결혼 중 국제결혼 비율



그러나, 국제결혼이 본격화된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문화가정의 해체문제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보다 진전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1년 이혼통계에 따르면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1만 1천 5백건으로 전

년보다 4백건(3.7%) 증가하였다. 국제결혼가족의 이혼 건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주된 원인은 국제결혼과정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부정확한 신상정보 제공 등 국제결혼과정상의 문제, 위장결혼, 남편의 생활무능력, 배우자 폭력,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생활양식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결혼 전에 얻은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입국 후의 현실과 불일치하면서 가정폭력, 경제적 빈곤 등에 따른 가정불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문화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표>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건수

(단위 : 건,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이혼건수	119,455	134,608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123,999	116,858	114,284
외국인과의 이혼 (총 이혼 중 비중)	1,498 (1.3)	1,694 (1.3)	1,744 (1.2)	2,012 (1.2)	3,300 (2.4)	4,171 (3.3)	6,136 (4.9)	8,294 (6.7)	10,980 (9.4)	11,473 (9.3)	11,088 (9.5)	11,495 (10.1)
증 감	96	196	50	268	1,288	871	1,965	2,158	2,686	493	-385	407
증 감 륜	6.8	13.1	3.0	15.4	64.0	26.4	47.1	35.2	32.4	4.5	-3.4	3.7
■ 한국남성+외국여성	247	387	380	547	1,567	2,382	3,933	5,609	7,901	8,246	7,852	8,349
증 감 륜	24.7	56.7	-1.8	43.9	186.5	52	65.1	42.6	40.9	4.4	-4.8	6.3
■ 한국여성+외국남성	1,251	1,307	1,364	1,465	1,733	1,789	2,203	2,685	3,079	3,227	3,236	3,146
증 감 륜	3.9	4.5	4.4	7.4	18.3	3.2	23.1	21.9	14.7	4.8	0.3	-2.8

1. 체류권 확보측면에서의 인권보호 강화방안

이혼 등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해체 증가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이혼 혹은 별거하게 된 경우’에 법적인 거주 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 혹은 별거하게 된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거주자격 보장과 관련해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측면에서 재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현재 혼인중단시 결혼이민여성이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국민인 배우자로 혼인한 상태로 국내

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인배우자와 별거 또는 이혼을 할 경우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판결문 등이 필요하나, 혼인파탄에 대한 입증책임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한국인 배우자 또는 그의 가족에 의한 상습적 구타 또는 심각한 물리적 폭력의 경우외에는 사실상 입증이 쉽지 않으며, 인격적 모독이나 경제적·성적 학대와 같이 입증하기 어려운 가정폭력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

특히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이 우리말과 글이 서투르며, 우리나라 법률시스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제기 후 혼인파탄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이 '이혼 혹은 별거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혼인파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단체가 발급한 가정폭력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인서로써 원고의 입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국민인 배우자와 별거 또는 이혼시 체류허가 기준

-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고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한국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할 때에는 배우자 사망의 경우와 동일하게 체류허가를 처리한다.
- 이혼의 귀책사유가 양측에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출생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한국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코자 할 때에는 동거기간 2년 미만은 1회 1년범위 이내, 2년이상일때는 1회 2년 범위내에서 체류허가를 처리한다.
-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배우자에게 있으나 출생한 자녀가 없는 상태이거나, 이혼의 귀책여부에 불구하고 자녀가 있으나 양육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는 실태조사를 거쳐 거주(F-2-1)자격으로 체류허가를 처리한다.
- 기타 예외적으로 국민의 가출, 폭력, 가정불화 등 배우자와 별거중인 경우 예외적으로 3개월씩 체류기간을 연장한다.
- 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배우자에게 있거나,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거주(F-2-1, 체류기간: 1년)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처리한다.

□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신고 판결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 등
- 이혼 또는 별거 이유가 결혼이민자에게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영주자격신청, 국적신청에 필요한 추가 서류(다음 중 1개 이상)
- 형사판결문 또는 이혼판결문(이혼판결문의 경우, 남편의 잘못이 나타나 있어야 함)
-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한 경우 ;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 배우자가 때린 경우 : 병원 진단서(남편으로부터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 상처 사진 등
-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
-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 실종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체적등본
-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
- 혼인관계가 단절될 때 살던 지역의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구체적인 혼인관계 단절 원인 및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함)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비하는 서류 :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의 확인서' 등

2.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방안

국제결혼은 상업화된 결혼중개와 맞물려 대량, 단기, 속성으로 진행되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국제결혼건수가 정점을 이룬 2005년도 전후에 위장결혼, 허위정보 제공에 따른 피해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을 배우자로 인식하기보다는 상품으로 여기게 만들었으며 미(美)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내외적인 우려를 낳았다.

특히 2010년 7월 베트남 출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망사건으로, 국가품격의 손상 및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결혼·입국단계에서부터 국제결혼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제결혼의 상당수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성사되고 있으나, 이들에 의한 탈법·상품화된 국제결혼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결혼성사를 위해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집단

맞선, 속성 결혼중개의 폐해로 결혼 후 가정갈등, 이혼 및 사회부적응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8년 6월 15일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을 제정·시행하였다.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국제결혼이용자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 동안 자유업이었던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였으며,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제한 및 의무부여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건전한 결혼중개 문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1년 11월 18일에 개정시행된 「결혼중개업법」에서는 결혼당사자간 신상공개 서면제공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여 그 동안 부정확한 신상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국제결혼 피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2012년 8월 2일 개정법률에서는 '18세미만 소개 금지' 및 '집단맞선 금지' 등을 규정하여 결혼이주여성이 인신매매와 성매매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혼인에 대한 진정성을 제고하였다.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인권침해적인 상업적 결혼중개 문화를 인권중심적인 건전한 결혼중개문화로 전환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이용자를 보호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향후 인권침해적인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에 대한 국·내외적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 상의 다문화가족 정의 확대 관련

법상의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우리나라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말하며, 한국인 남성과 이주여성 및 한국인 여성과 이주 남성간의 국제결혼에 의한 가정뿐만 아니라 결혼이주민가족을 포함한다. 이처럼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부적응과 자녀 교육,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지원을 목적으로 「법」이 2008년 3월 21일 제정되고 동년 9월 22일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왔다는 점에서 법·제도적으로 일반 국민과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한국인의 배우자인 만큼, 일반적 제한외국인 내지 이주민과도 다소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반적인 제한외국인의 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과 한국사회와 특수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자에 특화된 법률 차원에서 구분되어 접근되고 있다.

따라서, 법상의 '다문화가족'은 우리 국민이거나 국민예정자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 가족, 난민가족, 외국인 유학생 등에 관한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은 관련법과의 관계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맺음말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이주가 증가되면서 이민자 사회통합은 세계 각국의 큰 도전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유럽 등 서구 국가에서는 가족단위 이주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인과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국제이주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수성 속에서 탄생한 것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2008년 본격화된 이래 빠르게 성장하였다. 2012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은 2007년 대비 17배 이상 증가한 1,07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빠르게 성장한 데에는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이 급증하고 다문화가족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계화 흐름이 우리 사회에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변화의 요인이 우리 사회의 성숙과 발전의 계기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추진기반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앞으로도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보호 강화 등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권고한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되어 사회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등 능동적 대응이 요구된다.

‘난민 분야’ 토론회

김종철(공익법센터 어필)

1. 한국이 제출한 제15차 및 제16차 합동 정기보고서에 관한 심사한 후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012년 8월 30일 채택한 최종 견해 가운데 난민, 무국적자에 관해 다룬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가) 난민인정률, 나) 난민인정절차의 기간, 다) 난민인정과정에서의 적법절차 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마) 강제송환, 바) 난민과 무국적자 자녀의 출생등록, 사) 난민과 난민 신청자의 생존권. 아래에서는 각 주제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3. 난민인정률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세계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난민 인정 비율에 우려하면서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UNHCR 통계에 의할 때 2011년 전세계 난민인정률이 약 3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2011년 1011명의 신청자가 있었고, 340명에 대해 심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47명의 난민을 인정했습니다. 난민인정률이 약 13%인 것입니다. 그런데 난민으로 인정된 47명 가운데 법무부가 1차 심사에서 인정한 숫자는 3명이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8명, 행정소송을 통해서 인정된 숫자가 18명이고 가족결합의 통해서 인정된 숫자가 13명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1차 심사의 난민인정률은 1%가 안 되는 것입니다. 2011년 캐나다에서 한국 사람이 제기한 난민신청에 대해 96건의 심사를 해서 20명에 대해 난민인정을 했으니, 한국 사람에 대한 캐나다의 난민인정률은 20%가 넘는데, 한국의 난민인정률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4. 난민인정률 뿐 아니라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 숫자에 있어서도 한국은 민망한 수준입니다. 2011년 난민과 난민에 준하는 사람들(국내실향민 포함)이 전 세계에 4,100만명

이 있다고 하는데, 2012년 5월 말 현재 한국이 보호하고 있는 난민은 3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한국의 인구수, 경제적인 규모(2011년 GDP대비 세계 12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적은 숫자인데, 이 숫자는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난민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숫자인 514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5. 그런데 이렇게 난민을 인정하고 보고하는 비율이 낮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난민 인정절차에서 최소한의 적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도 "난민 인정 절차는 통역인들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난민위원회가 신청자들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다룬다는 점에서 여전히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6. 최근 법무부와 재단법인 동천을 중심으로 통역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의신청절차에서는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건이 서류로만 심사되고 있고 이의신청자의 구두진술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보장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 "적법절차는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하고, 이는 특로써 준수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7. 그런데 난민인정절차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심사관의 강압적인 태도입니다.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심사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서도 제대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생사여탈권이 심사관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 의뢰인 중에는 이란에서 고문당하고 한국에 온 사람이 있는데, 심사관이 얼마나 강압적으로 압박을 지르는지 마치 이란에서 고문을 당했을 때가 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8. 위원회가 "2013년 7월부터 발효되는 난민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했듯이, 난민법을 통해 난민인정절차가 공정해지고 투명해지는 면이 없지 않지만, 절차와 관련해서 더 악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간이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일정한 난민신청의 경우 난민인정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정 변경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 직전에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거짓 진술하는 경우,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난민 신청하는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것 하나 간이절차로 가야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9. 난민인정절차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절차가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담당 공무원이 적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난민 신청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가 매우 적고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진행 중인 난민 신청이 1,200개 이상이라는 정보를 접수하였다"라고 하면서, "난민 인정을 위한 절차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한 공무원을 추가적으로 임용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하여 보다 신속화 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0. 난민인정 절차 시 신청자에게 통역관을 제공하고 신청자들에게 관련 이의신청 단계에서 의견을 전달할 권리가 보장함은 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난민신청자의 사회적 처우의 부재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장기간의 난민인정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난민신청자는 합법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생계 지원은 전무하고 취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취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면 난민신청자라고 하더라도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소에 구금이 됩니다.
11.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부도 대부분의 취업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난민신청자 중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취업허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취업허가신청시에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G-1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고용계약을 맺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12. 위원회는 "생계, 고용,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교육, 국적취득의 측면에서 난민들 및 난민 신청자들이 접하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난민들과 난민신청자들이 근로의 권리를 향유하고 그들과 그 가족들이 적절한 생계, 주거, 의료 서비스, 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수단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3. 2013년 7월 1일 시행되는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의 사회적 처우에 관해서 지금 보다는 나아진 면이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에게 생계 지원이나 취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계지원과 취업허가 모두 재량 규정으로 되어있어서, 시행령에서 어떻게 구체화 할지 걱정이 됩니다. 시행령을 제정시에 위원회의 권고와 우려가 반영이 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14. 난민인정절차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과 강제송환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대한 제약 없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그를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행상 출입국항에서는 난민신청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이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강제퇴거의 위험에 놓였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15. 이러한 문제점은 난민법이 시행이 된다고 해서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난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가능하도록 하였지만, 그러한 신청에 대해서 예전에 없었던 난민신청적격성 판단을 하여 난민인정절차 불회부 결정을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16.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 난민인정불회부 결정을 하고,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로 바로 강제송환을 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난민신청에 대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로 강제송환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난민협약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17. 위원회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고문방지협약 이행의 문제입니다. 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문방지협약 제3조 등이 규정한 강제송환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강제송환금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도적 체류 허가가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이는 시혜적이고 재량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이행을 위한 제도라도 보기 힘듭니다. 이 부분 역시 난민법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은 부분인데, 시행령에서라도 담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8. 마지막으로 난민 등의 자녀의 출생등록에 대해서 위원회는 "난민, 난민 신청자 및 무국적자의 자녀들에 대한 적절한 출생등록의 부재는 그 중 특별히 우려되는 점이다",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하여 이미 권고된 바(CRC/C/KOR/CO/3-4)와 같이 한국 내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 신청자들의 자녀들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적절한 출생등록을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9. 이부분은 최근 UPR에서도 수많은 권고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근대사회에서 등록이 안되어 있거나 ID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한국의 가족관계등록은 한국사람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 종속해서 혹은 수반에서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외국인 독자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대사관 등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인 난민, 무국적자들은 도무지 출생을 등록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상 무국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20. 가족관계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 전이라도 대사관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외국인의 아동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21. 난민에 관한 규정이 출입국관리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난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난민을 대함에 있어서 국가안보만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이민 통제의 관점이 아니라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22. 그런데 최근 아주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한번 난민 신청을 했으나 소송하는 길을 몰라 기각처분을 받은 후에 숨어서 지낸 이란 출신 난민이 그 동안 이란 정부의 인권 탄압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이란 대사관 등에서 하다가 신문에 얼굴이

나와서 위협이 가중되어 다시 난민신청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난민신청자는 사정변경이 생겼지만 다시 난민신청하는 것이 두려워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을 구했고, 유엔난민기구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재신청을 받아 주겠다는 약속을 사무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난민신청을 하러 갔더니 신청서를 받은 공무원 3명이 이 사람을 차에 태워서 보호실이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서 긴급보호(구급)을 시킨 것입니다. 이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서 접수증을 보호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철창 앞에서 받았고, 며칠 후에 강제퇴거명령까지 받았습니다.

23.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난민인정절차를 과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깊은 회의가 들었습니다. 난민법 자체도 문제이지만, 아무리 난민법이 잘 만들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난민협약과 기타 국제 인권규범의 정신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난민들을 볼 때 그들의 취약성은 보지 못하고 체류의 불법성만 보기 때문입니다.

24. 현재 법무부는 2013년 7월 1일 난민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담긴 권고의 이행은 위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난민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 분야’ 토론문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2012.11.23.)

발제자의 이행과제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부분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1. 발제문 중 이주여성분야 이행과제에 대해

1-1. ‘권고 제 16항, 발제문 2-5)-(3) 인신매매’부분에 대해.

==> 인신매매의 태양이 협소하니 현실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범죄규율을 위해 형법 개정안에서 국제규범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수단행위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노동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권압류, 계약해지=출국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위협적 수단으로 사용하여 노동을 강요하는 등의 경우도 적절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2. 발제문 중 이주아동 분야 이행과제에 대해

2-1. ‘권고 제 11항, 발제문 2-2)-(3)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권리 보장’ 부분에서,

==>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은 폐기되었지만, 통합적인 특별법안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관련 법률개정 혹은 정부정책으로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은 당장이라도 개선할 수는 있다고 본다.

1) 혈통 우대 외국인력도입제도로 인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은 가족을 동반할 수 없고 한국체류 중에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한국에서 양육할 수 없어 아이를 출국시키거나 자녀를 미등록상태에서 양육하게 된다. 또한 차별적 제도의 영향으로 미등록상태가 된 경우에도 아동들은 미등록상태에서 성장하게 된다.

2) 미등록자들을 한국의 모든 사회보장(건강보험/의료관련 지원/ 보육지원 등) 시스템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인데 이는 성인-미성년의 구분이 없다. 그 양태는 두 가지로, 관련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어 있기도 하고, 규정상 특별한 배제내용은 없으나 사회보장서비스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 등을 갖출 수 없어 배제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유아도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함으로써 보육기관 이용 시 지원에서 제외되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며, 정부의 소외계층의료비지원사업에서도 협소한 적용으로 사실상 배제된다.

3)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아동교육권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이주아동들의 공교육진입단계-교육과정 중에 단계에서 뚜렷한 차별이 존재함이 드러났다. (첨부자료 1 참조) 아동들의 교육권은, 2011년 6월 법무부 및 교육과학기술부가 전적으로 수용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아동교육권보장권고'(2010.12)이 제대로 시행되기만 해도 상당한 정도 보장되게 된다.(첨부자료 2 참고)

우리 정부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라 해도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나 인종차별철폐조약과 같은 비준한 국제협약에 의해 위 사항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2. '권고 제 12항, 발제문 2-3) 미등록이주노동자' 부분에서.

==>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추방정책과 단속/보호에 관한 제도개선 시, '재학 중 혹은 취업중인 이주청소년의 경우 미등록이라 해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여 단속/보호/추방의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육권 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를 특별히 별도로 추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2년 10월 5일에도 17세의 몽골인 고등학생이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조치 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이 청소년에게 밤샘통역에 아침식사도 안주고, 출입국관리소측은 수갑을 채워 이 소년을 이송하였고, 낮모를 성인과 함께 한 방에 기거하게 하는 등 청소년의 인권을 여러 차례 침해하기도 했다.

2-3. '권고 제 13항, 발제문 2-4) 난민, 난민신청자, 무국적자의 상황' 부분에서.

==> '당사국에서 태어난 미등록이주민 자녀의 출생등록제도와 절차 마련 시, 출생등록제도와 절차가 사실상 미등록이주민의 주거탐색의 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녀의 출생등록으로 인해 가족의 주거가 출입국관리사무

소 측에 드러나는 결과가 된다면 어떤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더라도 미등록이주민이 자녀의 출생등록을 꺼려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3. 추가적으로 ‘2-1)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부분에 관하여.

3-1. 노동현장에서 다양한 양태로 일어나는 인종차별현상에도 주목하고, 사업주와 동료 한국인노동자들의 인종차별적 발언은 물론, 외국인에게 특별히 열악한 노동조건을 요구하는 행태들 역시 인종차별에 해당함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3-2. 성인들의 인종혐오사고와 발언에 영향 받는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의 인종혐오 발언도 주목해야 할 현상이며, 이의 개선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인종차별 교육을 시행해야 함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첨부자료 1] 이주아동 교육권실태조사의 일부 내용(국가인권위원회, 2010. 12.)

〈표 V-2-19〉 입학 당시 어려움 아동과 부모 비교

	있었다(빈도 : %)	
	부모	아동
1) 입학 절차이해	55(59.8)	67(37.2)
2) 자녀의 한국어능력	56(59.6)	113(61.4)
3) 비자	45(48.9)	63(34.3)
4) 부모의 한국어능력	44(48.4)	92(50.9)
5) 학교 측 입학 거부	27(28.8)	28(15.2)

〈표 V-1-13〉 한국 교육과정 진입 전 활동

	유치원 다님	지원단체 다님	집에 혼자 있음	부모님 직장에 따라 다님	노동	기타	합계
빈도(n)	39	54	65	3	3	22	186
퍼센트(%)	21.0	29.0	34.9	1.6	1.6	11.8	100.0

〈표 V-2-14〉 자녀 입학 과정 조력자

빈도(%)

	학교	지원단체	지인(친척포함)	도외주는 이 없었음
1) 모국어 통역자(센터) 소개	4(4.2%)	36(37.5%)	15(15.6%)	37(38.5%)
2) 모국어 학교 안내책자 제공	7(7.3%)	23(24.0%)	5(5.2%)	52(54.2%)
3) 입학에 관한 정보 제공	9(9.4%)	41(42.7%)	25(26.0%)	19(19.8%)
4) 입학에 필요한 서류 준비	10(10.4%)	38(39.6%)	16(16.7%)	26(27.1%)
5) 입학에 필요한 비용 지원	3(3.1%)	13(13.5%)	8(8.3%)	62(64.6%)
6) 비자 어려움에 도움 제공	1(1.0%)	33(34.4%)	6(6.3%)	47(49.0%)

〈표 VI-1-5〉 모국관련 교육

	아동(%)	부모(%)	학교(%)
모국문화체험	74.6	90.3	22.4
모국어 교육	71.5	88.5	11.9
모국어로 해주는 교육(성교육, 환경교육 등)	53.0	80.8	10.4

<표VI-1-6> 모국어 안내지 및 통역지원

	이동(%)	부모(%)	학교(%)
모국어로 된 학교생활 안내지/가정통신문	53.3	78.5	7.5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는 통역지원	43.0	47.3	7.5

<표VI-1-7> 나이에 맞는 학년배정

	이동(%)	부모(%)	학교(%)
나이에 맞는 학년 배정	66.3	83.9	

<표V-1-78> 학내 차별 경험 우선순위별

내용	있다	1순위	
	빈도(%)	교육형태	학교 급
1) 나의 발음이 이상하다고 놀린 적이 있다	78(41.9)	공교육	고등학교
2) 나를 따돌리거나 “너의 나라에 이런 것이지?”라며 무시한 적이 있다	68(36.6)	이탈	고등학교
3) 나에게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뒤에서 수군거린 적이 있다	57(30.6)	이탈	고등학교
4) 내 이름 대신 나라이름으로 부르거나 피부색이 다르다고 놀린 적이 있다	47(25.3)	공교육	중학교
5)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한 적이 있다	39(21.0)	공교육	고등학교
6) 나를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28(15.1)	공교육	초등학교
7) 나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내 돈이나 소지품을 빼앗은 적이 있다	17(9.1)	공교육	초등학교

<표V-1-79>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내용	그렇다 빈도(%)
1)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든 것	66(36.1)
2) 비자 없는 외국인 단속	55(30.2)
3) 본국의 학교문화와 한국학교 문화가 다른 것	52(28.6)
4) 나보다 어린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	51(27.8)
5) 한국학생들이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것	49(26.7)

[첨부자료 2]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주요 권고 내용 요약표(국가인권위원회, 2010. 12.)

권고항목		권고 내용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성 강화	공공 시스템에 의한 한국어 교육 강화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거점학교 확보와 이중언어 강사 투입 등으로 이주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교과과정과 별도로 진행하고, 교육에 적합한 한국어 교육교재, 교수법, 교육 과정을 강화할 것.
	입학절차, 학교생활에 대한 모국어 정보제공 강화	이주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교육제도와 관련된 모국어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통번역기관들과 연계 강화를 통해서 번역과 통역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주 학생에 대한 학교의 전입학 거부 행위 금지	모든 사람에게 초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과 기자재 부족 등을 이유로 이주아동의 전입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조항 정비 또는 행정지도·관리감독 강화할 것.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 방지와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 방지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 예방을 위해 장기결석 요인에 대한 검토에 기초해 이주아동이 학업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주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고, 학교생활을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조치 강화	교육현장에서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아동의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주아동을 비롯한 우리사회 소수자를 존중하는 인권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의 지향점과 방향을 정립하고,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과 그 피해아동 지원 등에 관하여 지도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적정한 학년배정 기준 및 원칙 마련	이주아동의 나이와 학년의 차이를 최대한 최소화 한다는 원칙 하에서 이주아동에 대한 나이, 본국학제, 학습능력 등을 고려한 적정한 학년배정 기준을 마련할 것.
이주아동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	이주아동과 그 부모의 단속, 강제퇴거 제도 개선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보호·강제퇴거 시 미성년자 처우에 대한 부분을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추가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그들의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그 부모가 단속되어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되었더라도 해당학기 또는 해당학년 수업을 완료하는 시점까지는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
	공무원 통보 의무제도 개선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이주민의 권리구제나 인권침해 구제를 업무로 하는 공무원(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 교육공무원, 보건소 의사, 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한 공무원통보의무의 적용을 유보 혹은 면제한다는 내용을 출입국관리법령에 규정할 것.

이주노동자 관련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이행방안에 대한 토론편

우다야 라이(민주노총 이주사업담당자)

고용허가제의 문제

한국 정부가 산업연수생 제도보다 좋은 제도라고 해서 실시한 제도가 고용허가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실시하는 정부한테는 괜찮게 보이지만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이주노동자에게는 아주 잔인한 제도입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이 제도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고쳐야 될 데가 많습니다. 고용허가제에는 근무기간 제한, 사업장 이동 제한, 업종이동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강제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업주가 동의 안하면 한 번도 사업장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열악한 조건에 있어도 참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제도에서 사업장 변경 하는 이주노동자 간에도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에서 제조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에 온 이주노동자들의 비자가 다르고 비자에 따라 그들이 받는 대우도 다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외에 다른 업종에는 근로기준법이 100%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조업은 농·축산업이나 어업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는 안 됩니다. 한국 정부는 같은 제도에 이주노동자를 데리고 오면서도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에서 모든 권리는 사업주에게만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행사 하면서 사업주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해 임금 체불 250억 넘고 있습니다. 이런 임금 체불에 대해 정부와 사업주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현실적인 법과 제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가장 하층의 노동력으로 고정시키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인종차별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대안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기 순환의 문제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 단기순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3년 일하고 사업주가 원하면 1년 10개월 더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일부터 4년 10개월 안에 한 번도 사업장 변경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을 '성실' 노동자로 인정해주면서 다시 4년 10개월 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9년 8개월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장기체류를 인정 않기 위해 출국해서 3개월 이후에만 한국에 입국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들어오게 되면 장기 체류 인정 안 되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차별입니다. 9년 8개월 일하는데 중간에 3개월 출국한다고 영주권 신청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3개월 출국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 단기순환 원칙이 실질적으로 무너진 현실을 정부가 인정하고 장기체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지침의 문제

지난 8월 1일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방지 대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을 브로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침을 만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에게 제공 해왔던 구인 업체의 명단을 앞으로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사업장 변경하는 이주노동자의 명단을 사업주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 이주노동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자유롭게 사업장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침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하기 위해 너무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하는 이주노동자가 다른 사업장 구하기 아주 힘듭니다. 이 지침의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캄보디아 노동자 T씨는 한국 사업장에서 6개월 일한 후 9월 30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T씨는 고용계약이 너무 나빴고 회사에서 세끼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고 매우 더럽고 좁은데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사업장을 찾기 위해 고용센터를 찾아 갔지만 5일이나 6일에 하나의 회사를 알

선 해줄 뿐입니다. 알선해준 사업장에 전화를 해도 사람 안 구한다고 말합니다. 사업장 찾기 위해 친구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센터가 알선 해주는 어느 사업장에 갔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교통비만 몇 십 만 원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지참 때문에 일자리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해서 3개월 안에 다른 사업장에 고용되지 못하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 지참을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온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사업주들의 폭행폭언을 견디지 못해 사업장 이탈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노동자들을 합법화하지 않고 단속해서 강제추방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런 단속과정에서 출입국과 경찰들의 무리한 단속 진압 때문에 해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입국사무소가 할당인원을 정해놓고 단속하고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 때와 장소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이 30명이 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부산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 한 명이 야간단속을 들어온 출입국을 피해 도망가다 담벼락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해 한국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단속과정에서 일어난 비인간적 행위에 책임을 지고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해야 합니다.

이주노조 인정 문제

이주노동자들이 2005년 4월에 이주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노조를 결성할 수 있고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회 같은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노동자와 간부들이 미등록이라고 해서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주노조를 탄압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주노조의 간부와 조합원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초대위원장 아느와르 후세인을 비롯해 5대 위원장까지 강제 단속되었고 대부분이 강제추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임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은 고용허가제 합법비자를 가진 노동자였지만, 출입국에서 허위취업이라는 꼬투리를 잡아 비자를 박탈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노조활동을 한 이주노동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노조활동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탄압의 대상이 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노조 인정을 위해 2005년에 서울 행정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합원과 간부가 미등록 체류자였기 때문에 노동3권 보장할 수 없다고 1심에서 판결 내렸습니다. 우리가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 했습니다. 그다음 2007년에 서울 고등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해도 노조 결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7년 2월 23일 노동부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아직까지 6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에 상고 한지가 거의 6년이 되도록 판결을 내리

지 않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조합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에 이주노동자들이 오기 시작한지가 오래된 만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하루빨리 이행해야 합니다.

2012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와 출입국관리 문제

우삼열(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

2012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한국사회의 부실한 단면에 대한 예리한 지적이자 뼈아픈 충고라고 보여진다. 특히,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논의는커녕 시민사회의 문제인식조차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하여 정부와 국회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국내법에 포함하'고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도록 촉구한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본 토론문은 발제자의 글에 대하여 깊은 동감을 표하며, 동시에 우리 정부의 정책이 가진 인종차별적 측면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지적함으로써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주아동에 대한 반인권적 강제추방

지난 10월 5일 추방당한 몽골인 K군(17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그는 몽골 청소년이 포함된 다툼을 목격하게 되었고, 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의 조사에서 통역을 돕게 되었다. 신원조회를 하던 경찰은 그가 미등록자인 것을 알게 되었고 "통역을 잘해주면 내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정작 통역을 마치자 K군을 출입국사무

소에 인계하였다. K군을 넘겨받은 출입국사무소는 몇 시간 뒤 곧바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그를 이송했고, 이곳에서 K군은 성년 피보호 외국인들과 같은 방에서 생활해야 했다. K군의 보호자가 일시보호 해제 신청을 하려 했으나, 보호소 담당 공무원은 2,000만원의 보증금을 거론하거나 일시보호 이후에도 2-3개월 뒤에는 출국해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을 포기하게 하였다. 결국 K군은 추방 당일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태워져 인천공항으로 이송되어 추방당하였다.

이 사건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운용 과정에서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와 차별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최종견해 11항에는 ‘특히 아동이 적절한 생계, 거주, 의료, 보건, 교육을 향유하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하여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단지 그가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사실이 없는 그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하였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2011년 6월 권리보호 및 구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통보의무의 적용을 유보 혹은 면제하겠다고 국가인권위에 통보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관련하여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부모가 단속된 경우 아동의 해당학기 마무리 등을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제도를 적극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기까지 한 바 있다. 통보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관행적으로 이주아동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한 경찰도 비인간적이지만, 미성년 아동을 사실상 구금시설인 외국인보호소에 넣어 성인들과 함께 수용하고 추방과정에서 수갑까지 채운 법무부의 처사는 개탄스럽기만 하다. 위원회가 각별한 관심과 우려로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비웃듯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아 아동학대와 비인도적 추방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현 정부의 인권의식 부재와 행정편의주의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사례이며, 법무부가 미등록자 단속과 추방의 실적에 급급하여 국제인권협약 이행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망사건까지 발생하는 미등록자 단속과 제도의 문제

지난 11월 12일, 부산시 기장군의 한 제조업체에서는 밤 9시 10분 경 출입국 단속반의 야간단속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S씨가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결국 6일 후 사망하였다. 민원제보를 받은 단속반은 사전 답사까지 하였으나, 현장에서 추락사고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철수하였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깊은 우려를 낳게 한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야간단속의 위험성과 폭력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야의 한계로 인한 추락의 가능성과 도주 및 물리적 폭력 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야간단속은,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단속반마저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는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안전을 의식하지 못한 채 도주하려 할 경우에 야간의 특성상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정한 체류기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속 중 목숨까지 잃는 이주노동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망 위험성은 외면한 채 단속 실적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 사건이 가진 또 다른 문제는 미등록자를 양산하는 제도적 원인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매우 많은 어업 이주노동자들이 선상폭력, 장시간 근무,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

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직장에서 도망쳐 이탈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어업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예상과 달리 입국 이후에 지나치게 열악한 작업환경에 처하게 되지만 제대로 된 인권구제와 보호의 장치가 없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 회사를 떠나 미등록자로 전락하는 이들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 '인간사냥'과 다를 바 없는 단속을 할 경우,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진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당사국(한국)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직된 고용허가제 때문에 미등록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자체가 미등록자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사망한 S씨는 제주도에 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탈하여 부산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중 사망하였다. 만일 그가 제주도의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처럼 어업에 종사했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라면,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부실한 제도를 만든 정부에도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 부실한 제도를 만들어 사람을 미등록자로 만들어놓고, 이도 모자라 그를 죽음으로까지 몰아 넣었다는 지탄을 정부 스스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S씨가 어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날 수많은 제도의 피해자들이 미등록자로 전락하여 죽음의 공포를 겪고 있음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UN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마치며

이러한 현실상황과 문제점들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수용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또다시 오류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앞으로 정부가 제대로 된 실태파악과 현실인식을 통하여 합리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

[참고자료 2]

**한국 내 이주민인권예 대한
유엔인권기구의
기존 우려 및 권고사항**

[참고자료 1]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81차 회기

2012년 8월 6일-31일

**협약 제9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사**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

대한민국

1.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하나의 문서로 제출한 제15차 및 제16차 정기보고서(CERD/C/KOR/15-16)를 2012년 8월 21일과 22일에 개최된 제2187차 및 제2188차 회의(CERD/C/SR.2187 및 CERD/C/SR.2188)에서 심사하였다. 위원회는 2012년 8월 30일 개최된 제2201차 회의(CERD/C/SR.2201)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하였다.

A. 서문

2.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원회 보고지침(CERD/C/2007/1)에 따라 제15차 및 제16차 합동 정기보고서를 적시(適時)에 제출한 것을 환영한다.

3. 위원회는 대표단의 참여와 보고서 심사 기간 동안 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질문과 논평에 대한 대표단의 답변에 관하여 감사를 표명한다.

B. 긍정적 측면

4.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종차별철폐와 다양성 증진을 위해 취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여러 긍정적인 진전과 활동을 환영한다.

- (a) 2013년 7월부터 발효되는 난민법 제정
- (b)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협약 비준
- (c)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d) 법무부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 설치

5. 위원회는 2008년 12월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2012년 3월 제2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채택에 주목한다.

C. 우려 및 권고

인종차별의 정의

6. 위원회는 헌법 제11조 제1항과 여러 개별법이 시민들에게 평등을 보장하고 인종차별을 금지하기에 충분하다는 당사국의 단언에 주목하지만, 협약 제1조와 조화를 이루는 인종차별의 법적 정의 부재에 재차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시민들에게 차별로부터의 충분한 보호가 보장된다는 추정 하에 협약 제1조와 조화를 이루는 인종차별의 정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재고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1조와 조화를 이루는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포함하고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30호(2004년)에서 권고한 시민과 비시민간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국내법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인종차별에 관한 법률

7. 위원회는 법무부가 위원회의 지난 권고에 따라 2007년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2008년 5월 제17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이 법안이 폐기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검토를 계속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되었다는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협약 제4조와 조화를 이루는 차별금지법이나 다른 포괄적인 입법의 완성과 도입에 신속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2009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E/C.12/KOR/CO/3),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C/KOR/CO/7)와 아동권리위원회(CRC/C/KOR/CO/3-4)가 동일한 권고를 하였음을 상기한다.

인종차별의 범죄화

8.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이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인종차별의 선동과 인종적 동기에 의한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부재를 포함하여, 현행 국내법이 협약 제4조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제4조에 대한 일반권고 제1호(1972년)를 상기하며 제2조와 제4조의 구속성을 재차 강조하며, 당사국이 형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범죄에 포함시키고, 인종차별을 범죄화하고, 침해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적절한 처벌을 규정하고, 인종차별을 가중처벌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포괄적인 입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 정보 부족과 인종차별에 관한 판례의 사실상 부재

9. 위원회는 당사국 역사상 인종차별에 기초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당사국이 인종적 동기에 의한 범죄에 관한 별도의 통계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행정과 형사사법제도 운영에서의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31호(2005년)를 상기하며 인종차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적은 상황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이는 특히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의 부재, 피해자의 보상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 또는 인식의 결여 때문일 수 있다고 본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낮은 고소·고발건수에 대하여 심도 깊게 분석하고, 그 차기 보고서에 관련 기관에 신고된 인종차별사건의 수, 고소·고발인의 국적과 법적 지위,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 및 기소 비율과 그 결과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인종주의적 혐오발언

10. 위원회는 비시민을 향한 인종주의적 혐오발언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더욱 확산되고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관련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인종 우월주의적인 사상을 유포하거나 인종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님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그 일반권고 제7호(1985년), 제15호(1993년) 및 제30호(2004년)에 따라, 당사국이 대중매체, 인터넷 및 소셜 네트워크를 감독하여 인종 우월주의적 사상을 유포하거나 외국인에 대하여 인종적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적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러한 행위의 주체들을 기소하고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한다.

이주노동자

11. 위원회는 고용허가제의 개정에 주목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착취, 저임금과 임금 체불의 상황에 처해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최장고용기간이 4년 10개월이고 국외에서 3개월 체류 후 한 차례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5년간 지속적인 국내 체류를 요건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영주자격의 대상이 사실상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를 누릴 수 없고, 이들 노동조합의 일부 간부들이 국외로 추방되었다는 정보에 대해 대단히 우려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E/C.12/KOR/CO/3)와 전적으로 같은 입장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비자유형의 복잡성과 다양성,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권리의 제한, 최장고용기간과 관련하여 고용허가제를 재개정할 것과,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완전히 누릴 수 있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이 적절한 생계, 주거, 의료서비스와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당사국이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이들 특정 이슈에 관하여 당사국이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12. 위원회는 기간이 제한된 (고용)허가와 비자의 경직된 시스템의 결과의 하나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이 된다는 점과 그들과 그들 가족이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권리와 접근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근로감독이 근로조건의 점검보다는 오히려 미등록 이주민의 색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단속이 강화되어 강제퇴거건수가 증가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추방된 노동자의 수와 더불어 근로감독 중에 적발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 그들의 상황과 구금기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직된 고용허가제 때문에 미등록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난민, 난민신청자 및 무국적자의 상황

13. 위원회는 당사국이 법무부에 국적·난민과를 신설하고 지난 수년 동안 난민지위가 인정된 사람들 수를 증가시키며 이 분야에서 더욱 노력해 왔음에 주목하지만, 세계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난민인정률을 우려를 가지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난민신청을 다루는 공무원의 수가 여전히 적고, 2012년 5월 현재 체류 중인 신청이 1,200건 이상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뿐만 아니라,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통역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난민인정협의회가 신청자가 참여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여 적법절차가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난민과 난민신청자가 생계, 고용, 공공서비스 접근, 교육, 시민권과 관련하여 직면하는 곤란을 여전히 우려한다. 특히 난민, 난민신청자, 무국적자의 자녀의 적절한 출생등록의 부재를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입국항에서도 공식적인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아무런 제약 없는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여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 난민과 난민신청자가 일할 권리를 누리 고 그들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계, 주거, 의료서비스,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이미 권고한 바와 같이 (CRC/C/KOR/CO/3-4) 당사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자 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그 차기 보고서에 불허건수와 인정건수를 구분하여 연간 총 난민지 위 신청건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난민지위인정절차가 국제기준에 부합되고, 신청심사 공무원의 추가 임명 등을 통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권고한다. 적법절차는, 특히 신청자들에게 통역을 제공하고 그들과 관련된 이의신청절차에서 그들의 청문권을 보장함을 통해, 전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외국인 여성의 보호

14. 위원회는 결혼중개업소의 의뢰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 리에 관한 법률이 2010년 개정되었고, 대한민국 입국 전에 결혼이주자에게 정보를 제공 하는 해외 프로그램이 3개국 5개 도시에서 시작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소되었 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외국인 여성 배우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위원회의 전 차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여전히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이혼 시에 외국인 아 내가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는 점과 외국인 아내로 하여금 공인된 여성단체의 이혼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입증책임이 완화된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혼을 원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권리가 여전히 적절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고, 이들이 육아나 시부모 부양과 같은 전형적인 성역할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국내 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의 젠더 관련 측면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0호(2005년)를 상기하 며 당사국이 별거와 이혼 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 함으로써, 그리고 사후 체류허가 및 기타 조항과 관련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 화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원회가 이에 관해 처음 권고 했던 2007년 이후 별거 또는 이혼 이후 체류자격을 박탈당한 외국인 배우자 건수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15. 위원회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종종 합법적인 체류 자격 박탈을 우려하여 그러한 범죄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그 결과로 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보고들에 대하여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폭력, 성적 학대, 인신매매, 기타 다른 형태의 폭력의 외국인 여성 피해자들이 확신을 갖고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은 회복할 때까지 당사국 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받고, 그들이 원할 경우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인신매매

16. 위원회는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과 그 협약의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방지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를 비준하겠다는 당사국의 의사와 성매매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주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인신매매되고, 연예산업 취업에 부여되는 E-6 비자의 악용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하여 우려한다.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표명한 우려와 권고(CEDAW/C/KOR/CO/7)에 동의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과 그 협약의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방지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를 비준하고, 형법을 개정하고, 인신매매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허용하고 이들을 적절히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이 그러한 범죄 신고를 막지 않도록 보장하는 국내 입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행 E-6 비자제도를 재검토하고, 이에 관련된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통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다문화가족

17.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주목하지만, 현재 다문화가족의 정의가 한국 시민과 외국인 사이의 결합으로 한정되어 두 외국인 파트너로 구성된 다문화가족과 같은 다른 형태를 배제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여 그들이 당사국의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방해하고 특히 자녀와 외국인 배우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미치는 사실상 차별적인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당사국의 영토 내에 있지만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통합시키기 위하여 외국인 사이의 결합이나 인종 간 결합을 포함하도록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통합의 부재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그러한 가족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18.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이 올해 4%이상 증가하였음에 주목하지만, 이 증가가 몇 년 전 있었던 21%의 예산 감축을 만회하지 못함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강제퇴거된 외국인 노동자들에 관한 보고를 입수했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 경험 많은 위원들이 최근 사임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회에 협약이행에 관한 독립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당사국의 보고서 초안에 관한 의견만을 제출한 것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2009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E/C.12/KOR/CO/3),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C/KOR/CO/7)의 권고를 상기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특히 그 독립성과 관련하여 파리 원칙에 부합하는 상태에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당사국의 책임을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상 권리의 증진과 감시를 포함하는 그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조사의 타이밍을 존중하고, 적절한 재정 자원과 경험 많은 인권전문인력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D. 기타 권고

다른 조약의 비준

19. 위원회는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을 유념하며, 당사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초국가범죄방지협약 및 그 협약의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방지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권한다.

더반 선언 및 행동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20. 더반 검토 회의 후속조치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33호(2009년)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을 그 국내법체계에서 이행할 때, 2009년 4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더반 검토 회의 결과문을 고려하여 2001년 9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더반 선언 및 행동 계획을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정기 보고서에 더반 선언 및 행동 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 계획과 기타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보급

21. 위원회는 당사국이 그 보고서를 그 제출 시점에 일반인들이 손쉽게 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보고서와 관련된 위원회의 견해를 공식어와 기타 통용어로 유사하게 알릴 것을 권고한다.

공통 핵심 문서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2010년에 제출한 그 핵심 문서(HRI/CORE/KOR/2010)를 국제인권조약상 보고에 관한 통일지침, 특히 2006년 6월에 개최된 인권조약기구들의 제5차 위원회 간 회의가 채택한 공통 핵심 문서에 관한 통일지침(HRI/MC/2006/3)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할 것을 권한다.

최종견해에 따른 후속조치

23. 협약 제9조 제1항과 개정 절차규칙 제65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번 최종견해의 채택으로부터 일 년 안에 위 제11항, 제12항 및 제13항에 포함된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중요한 항목들

24.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제14항, 제17항, 제18항의 권고가 특히 중요함을 인식하고, 차기 정기 보고서에서 이 권고들의 이행을 위하여 취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차기 보고서의 준비

25.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71차 회기에서 위원회가 채택한 인종차별철폐협약 고유 문서에 관한 지침(CERD/C/2007/1)을 고려하여 제17차 내지 제19차 정기 보고서를 단일 문서로 2016년 1월 4일까지 제출할 것과 이번 최종견해에서 지적된 모든 문제들을 다룰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조약 고유 보고 40쪽, 공통 핵심 문서 60-80쪽의 쪽수 제한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문서 HRI/GEN.2/Rev.6 제19항에 포함된 보고에 관한 통일지침 참고).

한국 내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인권기구의 기존 우려 및 권고사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정리

[참고자료]

1.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워킹그룹 보고서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8/40, 29 May 2008
2. 유엔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2007년 한국 방문 보고서
Jorge Bustamant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4/24/Add.2, 14 Mar. 2007
3.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CCPR,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 REPUBLIC OF KOREA*, UN Doc. CCPR/C/KOR/CO/3/CRP.1, 31 October 2006
4.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CESCR,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CESCR/C.12/KOR/CO/3, 20 November 2009
5.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CERD,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UN Doc. CERD/C/KOR/CO/1, 17 August 2007
6.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논평
CEDAW, *Concluding comment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Republic of Korea*, UN Doc. CEDAW/C/KOR/CO/6, 10 August 2007

<p>7.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논평 CEDAW, <i>Concluding comment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Republic of Korea</i>, UN Doc. CEDAW/C/KOR/CO/7, 1 August 2011</p> <p>8.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CRC, <i>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i>, UN Doc. CRC/C/15/Add.197, 18 March 2003</p> <p>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2012년 최종견해 CRC, <i>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i>, UN Doc. CRC/C/KOR/CO/3-4, 2 February 2012</p>
--

1. 총론

(1) 차별금지 관련 규정

한국법에는 인종차별의 정의가 없고,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1항에서 언급된 차별금지사유 중 그 어느 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⁴⁹⁾ 또한 아동권리협약에서 언급된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인종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다른 차별을 한국 헌법은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다.⁵⁰⁾ 한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이 자동적으로 국내법이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비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대부분의 권리와 자유를 국민과 동등하게 향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헌법 제10조에 엄격하게 따를 때에는 국민만이 법 앞에 평등하며 헌법 제2장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다.⁵¹⁾ 2007년 12월에 제17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은 심의 없이 폐기되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한국에 의하여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 정부의 테스크포스에 의하여 검토되고 있는 법안은 “차별금지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전형적인 차별금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여 일정한 차별 사유만을 포함하고 원래의 법안에 규정되었던 국적 등과 같은 다른 사유는 배제하고 있다.⁵²⁾ ‘차별금지법 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현존하는 차별 관련 90여개 법률의 효과성에 대한 협의를 2010년 말에 종결하였는데, 이러

49) CERD, *C n d n g e r n e C e e n e E n n R D r n n*, D . CERD/C/KOR/CO/1, 17 A g 2007, r . 10.

50) CRC, *C n d n g e r n e C e e n e R g e C d, D .* CRC/C/15/Add.197, 18 r 2003, r . 31.

51) CERD, *C n d n g e r n e C e e n e E n n R D r n n*, D . CERD/C/KOR/CO/1, 17 A g 2007, r . 14; CE CR, *C n d n g e r n e C e e n E n*, n d C r R g , D . CE CR/C.12/KOR/CO/3, 20 e er 2009, r . 6().

52) CE CR, *C n d n g e r n e C e e n E n*, n d C r R g , D . CE CR/C.12/KOR/CO/3, 20 e er 2009, r . 9; CRC, *C n d n g e r n e C e e n e R g e C d, D .* CRC/C/KOR/CO/3-4, 2 Fe r r 2012, r . 28.

한 협의의 결과에 대한 정보는 없고, 2008년 5월 이후 보류된 차별금지법 채택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⁵³⁾

한국은 인종 차별협약 제1조에 포함된 것에 금가는 인종 차별의 정의를 포함시
국내법이 이 협약과 조화를 이 수 있도 하여 하고, 이 협약 제1조 제1항에 따
라 금지사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차별의 정의를 토
할 것을 고려하여 한다.⁵⁴⁾ 또한 한국은 아동권리협약 제2조에서 나 하고 있는 모
거를 포함할 수 있도 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 을 제정하여 한다.⁵⁵⁾ 한국
은 인종 차별위원회의 비국민에 관한 일반권고 제30호(2004년)에 관 을 가 하
고, 인종 차별협약에 명시된 권리 향유에 있어 국제법 하에 인정된 정도 지 국민과
비국민간 평 을 보장할 수 있도 모 적절한 법 기타 조치를 하여 한다.⁵⁶⁾
한국은 사회적 약 제2조 제2항에 정된 와 은, 그리고 사회권위원회의 일반 평
제20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금지(제2조 제2항))에 부합하는 모
사유를 명확 정한, 직·간 적 모 형태의 을 명 금지하는 내용
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 차별협약 제1조 제2조와 일반권고 제28호(여성
차별협약 제2조에 거한 당사국의 의무(2010년))에 따라,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2005년) 제2조 제4항을 조하여, 포 적인 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 한 조치
를 하여 하고 이를 신 하여 한다.⁵⁷⁾

(2) 차별 관행

고용, 혼인, 주거, 교육 및 인간관계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주노동자와 민족
간 결합을 통하여 출생한 자녀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차별이 지속
되고 있다.⁵⁸⁾

한국은 인종 차별협약 제2조와 제5조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민 간 결합을 통하
여 출생한 자 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모 형태의 을 금지하고 하고, 다른
민 출신자가 이 협약 제5조에 명시된 권리를 평 하고 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
법을 포함한 가적인 조치를 하여 한다.⁵⁹⁾

53) CEDAW, *C n dng er n e C ee n e E n n D r n n g n W en Re Kre*, D . CEDAW/C/KOR/CO/7, 1 A g 2011, r . 14.

54) CERD, *C n dng er n e C ee n e E n n R D r n n*, D . CERD/C/KOR/CO/1, 17 A g 2007, r . 10.

55)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15/Add.197, 18 r 2003, r . 32;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KOR/CO/3-4, 2 Fe r r 2012, r . 29().

56) CERD, *C n dng er n e C ee n e E n n R D r n n*, D . CERD/C/KOR/CO/1, 17 A g 2007, r . 14.

57) CE CR, *C n dng er n e C ee n E n*, *nd C r Rg*, D . CE CR/C.12/KOR/CO/3, 20 e er 2009, r . 9; CEDAW, *C n dng er n e C ee n e E n n D r n n g n W en Re Kre*, D . CEDAW/C/KOR/CO/7, 1 A g 2011, r . 15.

58) CERD, *C n dng er n e C ee n e E n n R D r n n*, D . CERD/C/KOR/CO/1, 17 A g 2007, r . 11.

(3) 차별행위의 처벌

한국의 현행법이 이 협약 제4조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하고 있지 않은 인종 차별행위인 차별행위의 처벌에 관하여 한국은 인종 차별행위의 일반권고 제7호(1985년)와 제15호(1993년)에 관을 가하며, 이 협약 제4조에 따른 인종적으로 유발된 범죄의 금지에 관한 법적 조치를 하여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금지법과 을 향하여 신 하게 나아가 한다.⁶⁰⁾

(4) 차별금지 교육

명예훼손 관한 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나 모욕에 관한 형법 제311조와 같이 인종차별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현행 형법 조항이 국내법원에서 전혀 인용되어 주장되어진 적이 없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이 국내법의 일부를 구성하며 한국법원에서 직접 적용 가능하지만 이 협약의 조항을 언급하거나 직접적용가능성을 확인한 판결은 없다. 고소의 부재는 관련된 특정한 법률이 부재하고 법적인 구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당국 측에서는 기소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⁶¹⁾

한국은 경 공무원, 호사, 사 사를 포함하여 형사 사법 제도 내에서 일하는 자들에 대하여 인종 주의와 에 대한 국내법적 니 과 절 에 대한 교 을 실시하여 한다. 나아가 한국은 이 협약과 조항들에 대한 정보 인 교 로 그 을 조직하여 한다.⁶²⁾

(5) 민족적 단일성

역사적으로 한국은 스스로를 단일민족사회로 바라보았다.⁶³⁾ 그러나 한국이 민족적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영토 내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우의를 증진시키는 데 저해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는 "순혈"과 "혼혈"과 같은 용어, 그리고 그러한 용어가 야기할 수 있는 인종우월주의는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⁶⁴⁾

한국은 한국사회의 다민 적 성 을 인하고, 국내에 존재하는 실제 상 에 이상 부합하지 않는 단일민 국가라는 한국의 이미지를 하기 위하여 교 , 문화

59) CERD, *C n dng er n e C ee n e E n n R D r n n*, D . CERD/C/KOR/CO/1, 17 A g 2007, r . 11.

60) CERD, *C n dng er n e C ee n e E n n R D r n n*, D . CERD/C/KOR/CO/1, 17 A g 2007, r . 10.

61) CERD, *C n dng er n e C ee n e E n n R D r n n*, D . CERD/C/KOR/CO/1, 17 A g 2007, r . 20.

62) CERD, *C n dng er n e C ee n e E n n R D r n n*, D . CERD/C/KOR/CO/1, 17 A g 2007, r . 20.

63)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 rg gr n n* e Re K re , D . A/HRC/4/24/Add.2, 14 r. 2007, r . 53.

64) CERD, *C n dng er n e C ee n e E n n R D r n n*, D . CERD/C/KOR/CO/1, 17 A g 2007, r . 11.

정보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여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중고 학교의 교과과정과 교과서에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 집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와 모 인종 민족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의를 증진시키는 인권의식 로그 을 포함시 한다.65)

(6) 관련 국제기준

한국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하였다.66) 한국정부는 이 협약의 비준에 앞서 협약의 규정들을 여전히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67) 비록 상당수의 단체들이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의 필요성에 대하여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력은 현재까지 정부관계자를 논의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거나 이 협약의 비준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결정권자를 설득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여지가 가장 많은 문제 중의 하나가 가족재결합의 문제이다.68)

모 이주노동자와 그 가 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모 이주노동자와 그 가 의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최선의 국제법적 기제이 로, 한국은 이 협약을 선적으로 비 하여 하고69) 국내법이 그 협약의 조항과 합치하도록 만들어 한다.70) 또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 의 보호를 제한하는 기타 조약의 유보를 회하여 한다.71) 한국은 국내법적 질서 내에서 인종 협약의 이행, 이 협약의 제2조와 제7조의 이행에 있어서 반 선언 행동강 의 관 부분을 고려하여 한다.72) 한국은 또

65) CERD, *C n dng er n e C ee n e E n n R D r n n*, D . CERD/C/KOR/CO/1, 17 Ag 2007, r . 11.
 66)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 rg gr n n* e Re Kre , D . A/HRC/4/24/Add.2, 14 r. 2007, r . 5.
 67)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 rg gr n n* e Re Kre , D . A/HRC/4/24/Add.2, 14 r. 2007, r . 50.
 68)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 rg gr n n* e Re Kre , D . A/HRC/4/24/Add.2, 14 r. 2007, r . 52.
 69) CERD, *C n dng er n e C ee n e E n n R D r n n*, D . CERD/C/KOR/CO/1, 17 Ag 2007, r . 21; CEDAW, *C n dng en e C ee n e E n n D r n n g n W en Re Kre*, D . CEDAW/C/KOR/CO/6, 10 Ag 2007, r . 39; CEDAW, *C n dng en e C ee n e E n n D r n n g n W en Re Kre*, D . CEDAW/C/KOR/CO/7, 1 Ag 2011, r . 45;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 rg gr n n* e Re Kre , D . A/HRC/4/24/Add.2, 14 r. 2007, r . 57;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15/Add.197, 18 r 2003, r . 59; H n Rg C n , *Re r e W r ng Gr n e n er er d Re e Re Kre*, D . A/HRC/8/40, 29 2008, r . 64.7; CE CR, *C n dng er n e C ee n E n* , *nd C r Rg* , D . CE CR/C.12/KOR/CO/3, 20 e er 2009, r . 35;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KOR/CO/3-4, 2 Fe r r 2012, r . 84.
 70)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15/Add.197, 18 r 2003, r . 69.
 71) H n Rg C n , *Re r e W r ng Gr n e n er er d Re e Re Kre*, D . A/HRC/8/40, 29 2008, r . 64.7.
 72) CERD, *C n dng er n e C ee n e E n n R D r n n*,

한 여성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이 협약의 정들을 강화하는 이 선언 행동강을 분 활용하여 하고,73) 이 협약의 전하고 과적인 이행이 천년개발계의 성에 있어서 수 가결하기 문에 천년개발계의 성을 위한 모 노력에 성 인지적 관점을 결합시키고 이 협약의 정들을 명 반영하여 한다.74)

2. 노동 및 사회보장

(1) 한국 내 이주노동자

한국에 이주노동자들이 오기 시작한 것은 국제 언론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주목하면서 아시아 주변국가의 노동자들이 한국에 이끌리게 되었던 1980년대 후반이다.75) 1990년대 초,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악화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수천 명에 달하게 되면서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2006년 8월 현재, 정부와 비정부단체의 통계를 보면 전체 노동력의 약 1.5%에 달하는 최소 420,000명의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네팔,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다양하다.76)

한국의 이주노동자 고용제도는 ① 비숙련 이주노동자를 위한 고용제도, ② 숙련 이주노동자를 위한 고용제도, ③ 취업자격이 있는 기타 체류자격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비숙련 이주노동자의 경우 한국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교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필요최소한의 이주노동자만을 받아들이고 있다. 비숙련 이주노동자 고용제도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2개의 법제로 분류될 수 있다.77)

(2) 이주노동자의 일반적인 상황

한국정부는 이주의 흐름을 조직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이와 함께 요구되는 이주민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78) 이주노동자는 착취, 차별 및 체불임금의 대상이 되고 있다.79)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모두

D . CERD/C/KOR/CO/1, 17 A g 2007, r . 22.
 73) CEDAW, C n dng en e C ee n e E n n D r n n g n W en Re Kre , D . CEDAW/C/KOR/CO/6, 10 A g 2007, r . 37.
 74) CEDAW, C n dng en e C ee n e E n n D r n n g n W en Re Kre , D . CEDAW/C/KOR/CO/6, 10 A g 2007, r . 38.
 75)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rg gr n n e Re Kre , D . A/HRC/4/24/Add.2, 14 r. 2007, r . 7.
 76)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rg gr n n e Re Kre , D . A/HRC/4/24/Add.2, 14 r. 2007, r . 8.
 77)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rg gr n n e Re Kre , D . A/HRC/4/24/Add.2, 14 r. 2007, r . 9.
 78)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rg gr n n e Re Kre , D . A/HRC/4/24/Add.2, 14 r. 2007, r . 53.
 79) CE CR, C n dng er n e C ee n E n , nd C r Rg , D . CE CR/C.12/KOR/CO/3, 20 e er 2009, r . 20.

이주노동자의 거주 자격을 최초의 고용주에 대한 그들의 위치에 묶어둠으로써 이들을 더 큰 취약성에 노출시키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⁸⁰⁾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갱신이 불가능한 3년 계약만을 부여 받을 수 있고, 이직에의 심각한 제한뿐만 아니라, 더 오랜 근로시간, 더 낮은 임금, 안전하지 못하거나 위험한 근로조건 및 짧은 고용계약(3년) 등 지속적으로 차별적인 대우와 침해에 직면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의 공적 신분 증명서는 고용주에 의하여 압수되어 보관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 내 차별적인 대우, 임금 체불 혹은 미지급, 산업 재해의 경우 적절한 법적인 보호와 구제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⁸¹⁾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법원의 결을 따라 한다.⁸²⁾ 한국은 이주노동자들이 국적을 이유로 한 없이 노동권 자유권 약에 포함된 권리들을 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하고, 이러한 점에서 사회 지와 교 시설에 대한 동 한 권 만 아니라 노조 결성권에 대하여 한 주의를 기 어 하며, 고용계약의 연장 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 한다. 한국은 고용주에 의한 이주노동자의 인권 해가 있을 경 이들의 체류 자 과는 상관없이 적절하고 과적인 보호와 구제방법을 할 모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 수 있도록 과적인 조치를 하여 한다.⁸³⁾ , 이주노동자의 인권 해의 책 이 있는 모 고용주는 형 사기소를 통하는 의 방법으로 시 재 하여 하도 하여 한다.⁸⁴⁾ 한국은 고 려되고 있는 숙식비 공제를 감 한 최 금 정의 화가 이주노동자들에게 형평에 반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 한다.⁸⁵⁾ 은 업재해 발생 수와 분한 로감 판의 수에도 구하고 이주노동자 관 로감 은 업 전과 로조 보다는 이들의 출 국지위에 점이 지고 있다.⁸⁶⁾ 한국은 “ 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성명(E/C.12/2001/10)에 서 권고한 와 이, 절 전 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전한 통합 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 하고 그 조치의 전제로 인종을 포함하는 여러 집단 로 분류된 연도 인구비 에 관한 최신 통계자료가 확보되어 한다.⁸⁷⁾

80)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D. A/HRC/4/24/Add.2, 14 June 2007, para. 54.

81)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the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D. CC R/C/KOR/CO/3/CR.1, 31 October 2006, para. 12; CERD,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D. CERD/C/KOR/CO/1, 17 August 2007, para. 18.

82)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D. CE CR/C.12/KOR/CO/3, 20 September 2009, para. 20.

83)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the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D. CC R/C/KOR/CO/3/CR.1, 31 October 2006, para. 12; CERD,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D. CERD/C/KOR/CO/1, 17 August 2007, para. 18.

84)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D. A/HRC/4/24/Add.2, 14 June 2007, para. 61.

85)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D. CE CR/C.12/KOR/CO/3, 20 September 2009, para. 15.

86)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D. CE CR/C.12/KOR/CO/3, 20 September 2009, para. 17.

(3) 산업연수생제도

1992년,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은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였다. 산업연수생제도 프로그램이 처음에 목표로 하였던 바는 한국 회사가 고용한 이주노동자들이 기술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작업능력을 증진시키도록 이들에게 연수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일자리는 소위 3D라고 불리는 “더럽고(Dirty)”, “어렵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업무였다.⁸⁸⁾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위는 그 고용주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었고, 이는 이들을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하였다. 산업연수생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부분 한국 국민들이 기피하는 작업을 위한 비숙련 노동으로 동원되었으며 이들이 받는 급여는 실제 임금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은 사업장을 변경할 권리도 없었고, 최소임금, 사회보장 및 근로시간에 관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⁸⁹⁾ 산업연수생들은 고용주에 의한 여권, 비자나 신분증 등의 압수 혹은 보관, 임금 체불과 미지급, 그리고 언어적 폭력과 때때로 가해지는 신체적 폭력과 같은 인권 침해를 감내하였다.⁹⁰⁾

이에 더하여 산업연수생들에 관한 채용 및 관리는 심각하게 왜곡되어있다. 산업연수생들은 중소기업중앙회의 통제 하에서, 연수를 신청하기 위하여 큰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고, 한국에서 일하면서 장기 채무에 대하여 매달 돈을 갚아나가야 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동수출국의 채용중개회사와의 불투명한 연결고리를 통하여 산업연수생제도 프로그램을 독점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의 구직비용 중 일부를 취하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관은 또한 이러한 착취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허용한 책임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 이주연수생들의 취약성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산업연수생들이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실상 노예처럼 일하여야 하는 상황을 유발한 엄청난 부채 수준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들의 취약성을 상당히 악화시킨 시스템을 제도화시켰다.⁹¹⁾ 힘든 작업 환경에서 벗어나서, 많은 연수생들은 그들에게 지정된 사업장을 떠나고 산업연수생제도 밖에서 일자리를 구하였다. 이들의 법적 지위는 연수생신분으로 엄격하게 묶여있었기 때문에, 연수생들은 법적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회사를 떠나는 순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경우 더한 착취에 노출되었다.⁹²⁾

87) CE CR, *C n dng er n e C ee n E n* , *nd C r Rg* ,
D . CE CR/C.12/KOR/CO/3, 20 e er 2009, r . 24.

88)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 rg gr n n*
e Re K re , D . A/HRC/4/24/Add.2, 14 r. 2007, r . 10.

89)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 rg gr n n*
e Re K re , D . A/HRC/4/24/Add.2, 14 r. 2007, r . 11.

90)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 rg gr n n*
e Re K re , D . A/HRC/4/24/Add.2, 14 r. 2007, r . 12.

91)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 rg gr n n*
e Re K re , D . A/HRC/4/24/Add.2, 14 r. 2007, r . 13.

92)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 rg gr n n*

그러나 계속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는 등록된 산업연수생의 수를 넘어왔다. 노동부가 1997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는 약 16,000명 남짓한 산업연수생이 있는 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는 130,000명에 달하였다. 2001년, 정부는 산업연수생이 1년간 산업연수생신분을 거친 후에는 2년간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등 본 제도를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2002년에는 연수생 한도를 130,000명으로 늘렸지만, 290,000명의 이주노동자의 약 80%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다. 과도한 구직 비용과 낮은 임금과 같은 문제들은 여전히 주된 문제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2003년 한국정부는 이주민을 위한 새로운 노동법으로서 고용허가제법을 입안하게 되었다.⁹³⁾

(4) 노동허가제

8년간의 논쟁 끝에, 국회는 2003년 8월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고용허가법안을 통과시켜 고용허가제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처음에는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고용주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 당국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모두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7월에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과 서비스 산업에 도입되었다.⁹⁴⁾ 고용허가제는 한국과 송출국간의 권리 및 의무, 노동자들의 지위와 혜택을 제시하는 두 국가 사이에서 서명된 양자 양해각서에 의하여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절차는 양국의 노동부가 관여하고 민간 영역의 개입은 배제된다. 2006년 12월까지 고용허가제하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을 포함한 9개 국가가 한국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⁹⁵⁾

전반적으로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이주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지위를 부여한다. 채용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통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하의 노동자의 75% 정도가 한국에 오기 위하여 미화 1,100불 이하를 지출하였다.⁹⁶⁾ 또한 고용허가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합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3년, 노동부에 등록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227,000명을 넘었고 이들 중 80%는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⁹⁷⁾ 고용허가제하의 노동자들은 양해각서 당사국간의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포함하는 보험 혜택을 받는다. 노동자들은 노동관련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한국인 노동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지니고, 따라서 최저임금, 노조설립권,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받는

93) *e Re* *K re*, D . A/HRC/4/24/Add.2, 14 r. 2007, r . 14.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 rg gr n n

94) *e Re* *K re*, D . A/HRC/4/24/Add.2, 14 r. 2007, r . 15.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 rg gr n n

95) *e Re* *K re*, D . A/HRC/4/24/Add.2, 14 r. 2007, r . 16.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 rg gr n n

96) *e Re* *K re*, D . A/HRC/4/24/Add.2, 14 r. 2007, r . 17.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 rg gr n n

97) *e Re* *K re*, D . A/HRC/4/24/Add.2, 14 r. 2007, r . 18.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 rg gr n n

e Re *K re*, D . A/HRC/4/24/Add.2, 14 r. 2007, r . 19.

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이러한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사법적 구조를 제공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⁹⁸⁾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매년 고용 계약을 3년이 넘지 않은 기간 동안 고용주와 갱신하도록 한 점은 이들을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 계약의 일 년마다의 연장 여부가 고용주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아주 극소수의 노동자만이 감히 자신들의 부당한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 더욱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는 처음 고용된 회사에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이들의 직장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3년 기간 이상 체류를 연장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은 재입국 전에 적어도 1년간 한국을 떠나야 한다.⁹⁹⁾

이주노동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금액은 부당하게 많은데,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자국에서 빈곤층 혹은 중하층 가정 출신이고 위 금액은 자국의 1년 혹은 2년간의 평균임금에 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주노동자들이 매우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거나 자신의 땅이나 집을 저당 잡게끔 강제한다. 이러한 높은 부채는, 단지 빚을 갚는 데에만 3년의 대부분을 걸리게 하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3년의 기한을 넘어 한국에 체류하게 되는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이다.¹⁰⁰⁾ 고용허가제 프로그램은 가사 서비스 영역에 고용된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가족 재결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10,00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의 가족재결합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결의 문제로 남아있다.¹⁰¹⁾

노동부에 따르면, 모든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상정책의 보험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은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고,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관련 사고를 보고하지 않는다. 고용주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도입하여야 할 의무를 따르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보험을 들며, 작업관련 사고를 보고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험 회사의 조사와 안전조치의 채택에 대한 이들의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다.¹⁰²⁾

2007년 8월이면 고용허가제 시행의 3년 주기가 마무리되고 정부는 특히 미등록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제도를 수정하기로 하였다. 한국의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2007년 개정될 고용허가제법을 통해 합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98)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para. 20. (A/HRC/4/24/Add.2, 14 Dec. 2007, para. 20.)

99)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para. 21. (A/HRC/4/24/Add.2, 14 Dec. 2007, para. 21.)

100)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para. 22. (A/HRC/4/24/Add.2, 14 Dec. 2007, para. 22.)

101)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para. 23. (A/HRC/4/24/Add.2, 14 Dec. 2007, para. 23.)

102)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para. 24. (A/HRC/4/24/Add.2, 14 Dec. 2007, para. 24.)

법무부와 출입국당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³⁾

한국은 국내에서 과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 로자의 고용 에 관한 법 을 지 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한다.¹⁰⁴⁾ 또한 한국은 한국정부가 서명하거나 비 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로운 고용 가제법의 시행의 수정을 고려 하여 한다. 이와 관 하여 비숙 이주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인권 해를 당한 경 해당 당국에 이를 신고할 수 가능성을 제공할 요에 대하여 한 주의를 기 여 한다.¹⁰⁵⁾ 사업장이동에 대하여 정된 3개 의 기간은 매 분하다는 사실에 한 주의를 기 여 한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단지 합법적인 체류자 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로조 의 일자리를 종종 선 의 여지가 거의 없이 받아들일 수 에 없는 현재의 경제 상 에서는 그러하다.¹⁰⁶⁾ 한국은 이주노동자에게 가 재결합의 가능성 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한다.¹⁰⁷⁾

3. 미등록 이주노동자: 구금 및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수색하고, 구금하고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권한이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한 구금명령서의 발급은 구속영장이 법관에 의하여 발부될 것을 요구하는 헌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 2005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과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활동에 있어서, 법무부 공무원들이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논하면서 출입국관리당국이 속한 법무부에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¹⁰⁸⁾ 당국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통제와 추방을 강화하였고, 한국에 남아있는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체포하고, 종종 매우 열악한 환경 하에서 구금하고, 추방하는 일련 의 활동을 수행하였다.¹⁰⁹⁾ 구금 장소에서의 고문 혹은 부당한 대우가 주장되고 있고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처벌이 결여되어 있다.¹¹⁰⁾ 게다가 많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하여 장기치료를 요하는 혹은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미등록 이주노

103)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rg gr n n
e Re Kre, D . A/HRC/4/24/Add.2, 14 r. 2007, r . 25.

104) H n Rg C n , Re r e Wr ng Gr n e n er er d Re e Re
Kre, D . A/HRC/8/40, 29 2008, r . 64.3.

105)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rg gr n n
e Re Kre, D . A/HRC/4/24/Add.2, 14 r. 2007, r . 59.

106) CE CR. C n dng er n e C ee n E n , nd C r Rg ,
D . CE CR/C.12/KOR/CO/3, 20 e er 2009, r . 20.

107)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rg gr n n
e Re Kre, D . A/HRC/4/24/Add.2, 14 r. 2007, r . 60.

108)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rg gr n n
e Re Kre, D . A/HRC/4/24/Add.2, 14 r. 2007, r . 27.

109)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rg gr n n
e Re Kre, D . A/HRC/4/24/Add.2, 14 r. 2007, r . 28.

110) CC R, C n dng O er n e H n Rg C ee RE B C OF KOREA, D .
CC R/C/KOR/CO/3/CR .1, 31 O er 2006, r . 13.

동자가 아무런 보상 없이 치료 직후에 한국을 떠날 것을 강요받아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¹¹⁾

2005년 10월까지, 30,000명 이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추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규적 등록 이주노동자 또한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하여 구금되고 조사를 받아 왔는데 이는 이들로 하여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소재를 밝히게 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¹¹²⁾ 2006년 12월 현재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구의 절반을 넘는 적어도 189,000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있었다. 상당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비자의 기한을 넘어서 체류하였으며, 일부 이주민은 계속적으로 추방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아무런 서류 없이 10년 이상을 한국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특히 중소기업에서 노동력에 대한 높은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였고 이들이 한국어 능통하고 더 나은 작업 기술을 지닌 장기 이주노동자였기 때문에 이들의 체류는 묵인되었다.¹¹³⁾

한국은 정신 원을 포함한 모 구금 장소에서 범집행 공무원들에 의한 모 형태의 부당한 대 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들을 하여 한다. 적절한 조치들은 적인 조사기구, 시설에 대한 적인 감 , 문시의 비 화를 포함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행위를 범한 범죄자들을 기소하여 하고, 그들이 지른 범죄의 성에 상 하는 방식으로 수 있도 하여 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상을 포함한 과적인 구제를 보장하여 한다.¹¹⁴⁾ 모 형태의 구금에 있어서 한국은 호사에 대한 신 한 권을 보장하여 한다.¹¹⁵⁾ 한국은 어 한 구금이라도 적으로 사법적 사의 대상이 수 있도 하여 한다.¹¹⁶⁾

한국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3조에 정된 강제 에 대한 절 적 보장에 따라 방보다는 자발적 을 조장하여 한다.¹¹⁷⁾ 한국은 모 러 방지 관 법조치들이 자유권 약에 따 도 하여 하며, 강제 거와 관 된 국내 법 는 자유권 약의 관 정을 하게 따라 한다.¹¹⁸⁾

111)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D . A/HRC/4/24/Add.2, 14 r. 2007, r . 28.
 112)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D . A/HRC/4/24/Add.2, 14 r. 2007, r . 29.
 113)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D . A/HRC/4/24/Add.2, 14 r. 2007, r . 30.
 114)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Sub-Commission on Human Rights,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CC R/C/KOR/CO/3/CR .1, 31 O er 2006, r . 13.
 115)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Sub-Commission on Human Rights,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CC R/C/KOR/CO/3/CR .1, 31 O er 2006, r . 14.
 116)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Sub-Commission on Human Rights,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CC R/C/KOR/CO/3/CR .1, 31 O er 2006, r . 16.
 117)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D . A/HRC/4/24/Add.2, 14 r. 2007, r . 58.
 118)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Sub-Commission on Human Rights,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CC R/C/KOR/CO/3/CR .1, 31 O er 2006, r . 9.

4. 이주여성

(1) 한국 내 이주여성, 그리고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여성들은 그들의 성과 지위에 기초한 다중의 침해에 특히 취약하다. 이들은 가정, 가족과의 관계, 수용사회 안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의 이주노동자로서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¹¹⁹⁾ 현재 한국 내의 여성 이주노동자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직장 내 성희롱과 학대의 위협에 빈번히 노출되어 있지만,¹²⁰⁾ 피해자들은 일자리나 체류지위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구제책을 거의 강구하지 않는다.¹²¹⁾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동료 남성노동자들보다 더 낮다.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체포와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이 겪은 폭력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다.¹²²⁾

한국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 할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여 하고,¹²³⁾ 모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실현하고, 그들이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한다.¹²⁴⁾

(2) 인신매매

한국은 인신매매를 다루는 포괄적인 법을 두고 있지 않고,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가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¹²⁵⁾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는 여전히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²⁶⁾ 한국의 법률이 성매매나 성적 착취뿐만 아니라 모든 영리 목적을 위한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여성과 아동, 특히 본래 E-6 비자(예술홍행비자)로 입국한 여성노동자들이 계속해서 한국으로부터, 한국을 통하여, 그리고 한국 안에서 성적 착취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¹²⁷⁾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을 통하여 입국하는 결혼이주

119) *Re B. K. v. Korea*, D. A/HRC/4/24/Add.2, 14 r. 2007, r. 55.

120) *Re B. K. v. Korea*, D. A/HRC/4/24/Add.2, 14 r. 2007, r. 32.

121) CE CR, *C. N. d. g. e. r. n. e. C. e. e. n. E. n. n. D. r. n. n. g. n. W. e. n. R. e. K. r. e.*, D. CE CR/C.12/KOR/CO/3, 20 e. er 2009, r. 16().

122) *Re B. K. v. Korea*, D. A/HRC/4/24/Add.2, 14 r. 2007, r. 32.

123) *H. n. R. g. C. n. , R. e. r. e. W. r. n. g. G. r. n. e. n. e. r. e. r. d. R. e. e. R. e. K. r. e.*, D. A/HRC/8/40, 29 2008, r. 64.15.

124) *H. n. R. g. C. n. , R. e. r. e. W. r. n. g. G. r. n. e. n. e. r. e. r. d. R. e. e. R. e. K. r. e.*, D. A/HRC/8/40, 29 2008, r. 64.8.

125) CEDAW, *C. n. d. n. g. e. n. e. C. e. e. n. e. E. n. n. D. r. n. n. g. n. W. e. n. R. e. K. r. e.*, D. CEDAW/C/KOR/CO/7, 1 A g 2011, r. 22.

126) CERD, *C. n. d. n. g. e. r. n. e. C. e. e. n. e. E. n. n. R. D. r. n. n. D. . CERD/C/KOR/CO/1, 17 A g 2007, r. 16; CEDAW, C. n. d. n. g. e. n. e. C. e. e. n. e. E. n. n. D. r. n. n. g. n. W. e. n. R. e. K. r. e.*, D. CEDAW/C/KOR/CO/6, 10 A g 2007, r. 19.

127) CE CR, *C. n. d. n. g. e. r. n. e. C. e. e. n. E. n. n. , n. d. C. r. R. g. , D. . CE CR/C.12/KOR/CO/3, 20 e. er 2009, r. 23; CEDAW, C. n. d. n. g. e. n. e. C. e. e. n. e. E. n. n. D. r. n. n. g. n. W. e. n. R. e. K. r. e.*, D. .

여성들 중 많은 수도 인신매매와 성매매착취의 피해자가 된다.¹²⁸⁾ 인신매매범들에 기소와 유죄선고의 수는 특히 우려스러운 정도로 낮다.¹²⁹⁾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성적 착취의 피해자 재활 서비스가 부족하다.¹³⁰⁾

한국은 인신매매에 관한 포 적인 법 을 제정하고, 형법 관 법 을 개정하여 인신매매로 범죄에 포함시 한다.¹³¹⁾ 한국은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 를 지른 자 들이 그 범죄에 대해 책 질 수 있도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보장하여 한다.¹³²⁾ 한국은 인종 위원회의 인종 의 성 관 면에 관한 일반권고 제25호(2000년)에 관 을 가 하고, 성적 은 가사 노예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여성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 미 상 에 인 이들에 게 적절한 정보와 지원 협조를 제공하도 노력하여 한다.¹³³⁾ 한국은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된 여성들과 소 들을 보호, 지원하고 인신매매의 원인을 다루기 위하여 신화된 조치들을 하여 한다.¹³⁴⁾ 한국은 여성 협약 제6조를 전 이행하고 경 국제적 출 를 통하여 은 자료를 수집, 분석하며 인신매매범을 기소 하여 한다.¹³⁵⁾ 한국은 () E-6 비자 발 의 감시 강화, ()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로그 과 정보 인 지원, () 경 , , 법관의 반 인신매매 법 에 대한 의무교 의 제공, (d)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리적 법적 지원의 확대, (e) 이주노동 자들이 체류지위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과적인 진정 절 의 보장, () 인신매매 사 에 대한 분 조사 사법정의의 보장 을 통하여 어 한 목적에서 여 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없 는 노력을 강화하여 한다.¹³⁶⁾ 만 아니라 출신국, 통과 국, 목적국과 국제적, 지역적, 양자적 원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증대시 인신매매를

CEDAW/C/KOR/CO/7, 1 A g 2011, r . 22;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KOR/CO/3-4, 2 Fe r r 2012, r . 74.

128) CEDAW, *C n dng en e C ee n e E n n D r n n g n W en Re Kre, D .* CEDAW/C/KOR/CO/7, 1 A g 2011, r . 22.

129) CE CR, *C n dng er n e C ee n E n , nd C r Rg , D .* CE CR/C.12/KOR/CO/3, 20 e er 2009, r . 23;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KOR/CO/3-4, 2 Fe r r 2012, r . 74.

130)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KOR/CO/3-4, 2 Fe r r 2012, r . 72.

131) CEDAW, *C n dng en e C ee n e E n n D r n n g n W en Re Kre, D .* CEDAW/C/KOR/CO/7, 1 A g 2011, r . 23().

132)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KOR/CO/3-4, 2 Fe r r 2012, r . 75.

133) CERD, *C n dng er n e C ee n e E n n R D r n n, D .* CERD/C/KOR/CO/1, 17 A g 2007, r . 16; H n Rg C n , *Re r e W r ng Gr n e n er er d Re e Re Kre, D .* A/HRC/8/40, 29 2008, r . 64.21.

134) CEDAW, *C n dng en e C ee n e E n n D r n n g n W en Re Kre, D .* CEDAW/C/KOR/CO/7, 1 A g 2011, r . 23(e).

135) CEDAW, *C n dng en e C ee n e E n n D r n n g n W en Re Kre, D .* CEDAW/C/KOR/CO/6, 10 A g 2007, r . 20; CEDAW, *C n dng en e C ee n e E n n D r n n g n W en Re Kre, D .* CEDAW/C/KOR/CO/7, 1 A g 2011, r . 23.

136) CE CR, *C n dng er n e C ee n E n , nd C r Rg , D .* CE CR/C.12/KOR/CO/3, 20 e er 2009, r . 23.

방지하여 한다. 한국은 또한 유 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의 인신매매,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의 예방, 제 을 위한 의정서를 비 하여 한다.¹³⁷⁾ 한국은 국내법이 아동권리협약 제35조와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그리고 아동 포 노그라피에 관한 선 의정서 제2조와 제3조에 합치되도 요한 모 조치를 하여 한다. 인신매매와 성 피해자의 가장 공통적인 출신국을 고려하여 다언어 체제를 포함하여 소 만 아니라 소년에게도 재활 서비 를 제공하여 한다.¹³⁸⁾

(3) 예술홍행 E-6 비자

예를 들어 E-6 혹은 "예술홍행 비자"의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음악, 미술, 문학,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데 이러한 "예술홍행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오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성매매에 희생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비자종류는 1994년에 제정되어 외국 여성 예술홍행업 종사자에 대한 증가된 수요를 충족시켜 왔고, 1997년 이래 그 신청은 두 배가 되었다.¹³⁹⁾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시들이나 미군기지 주변에는 상당수의 성매매업소가 성행하고 있다. 성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종종 고용주로부터 자의적 구금과 언어적 혹은 신체적 학대 등의 심각한 침해에 시달린다. 이주 성노동자의 경우, 언어와 문화적 장애가 그들의 취약한 법적 지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가 그들의 "예술홍행" 비자기간을 상당히 초과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침해에 대해 신고를 하거나 정부당국의 구제를 요청하는 것을 더욱더 어려워진다.¹⁴⁰⁾ 한 베트남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장시간의 가사노동과 지난 16개월간 고용주의 임금 미지급을 이야기하였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12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녀는 코끼리 쇼에서 연예인으로서 공연을 하였으며, 게다가 고용주의 고객을 위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받았다. 결국 그녀는 도망쳐 나와 쉼터에 머물고 있었다.¹⁴¹⁾

2004년 9월 한국은 고용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피고용인이 지게 된 빚을 청산하기 위

137) CEDAW, *C n dng en e C ee n e E n n D r n n g n W en Re Kre*, D . CEDAW/C/KOR/CO/6, 10 A g 2007, r . 20; CEDAW, *C n dng en e C ee n e E n n D r n n g n W en Re Kre*, D . CEDAW/C/KOR/CO/7, 1 A g 2011, r . 23(g); H n Rg C n , *Re r e W r ng Gr n e n er er d Re e Re Kre*, D . A/HRC/8/40, 29 2008, r . 64.7;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KOR/CO/3-4, 2 Fe r r 2012, r . 75.

138)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15/Add.197, 18 r 2003, r . 73.

139)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 rg gr n n e Re Kre*, D . A/HRC/4/24/Add.2, 14 r. 2007, r . 33.

140)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 rg gr n n e Re Kre*, D . A/HRC/4/24/Add.2, 14 r. 2007, r . 34.

141)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 rg gr n n e Re Kre*, D . A/HRC/4/24/Add.2, 14 r. 2007, r . 35.

한 수단으로 피고용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고용주에게 장기 10년의 징역형을 규정한 조항이 포함된 법을 제정하였다. 이 새로운 법은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업주들을 고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이 법은 성산업에 머물기를 원하거나 성매매를 강요받았음을 증명할 수 없는 이들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이 법에 의한 경찰단속이 많은 성노동자들 더욱 지하세계로 내몰아 이들을 더욱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¹⁴²⁾

한국은 외국인 여성을 선발하는 연예기사의 현행 기사절차를 강화하고, E-6 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여성들이 성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이 일하는 업소들에 대한 과적인 현장 감시 장리를 수 하여 한다.¹⁴³⁾

(4) 국제결혼

과거 몇 년 동안 국제결혼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새로운 고용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합법적인 이민경로가 제한적이다 보니 장기간의 안정된 거주 지위를 보장하는 국제결혼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각광을 받게 되었다. 2006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은 30,000건에 이르고 이는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결혼보다 3배나 높은 수치이다. 2006년 국제결혼의 수는 한국 내 총 결혼의 수의 13.6%를 차지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국제결혼은 전체결혼의 36.9%를 차지한다.¹⁴⁴⁾ 외국 여성배우자의 국적별 통계에 의하면 중국이 66.2%, 베트남이 18.7%, 일본이 4%, 필리핀이 3.2%를 차지하고, 나머지 여성은 태국, 몽골,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⁵⁾

관계당국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사회로의 통합인데 지방자치당국이나 단체장의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지원을 제공하여주기 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¹⁴⁶⁾ 중앙정부는 이것을 지방자치당국 관할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언어교육반과 문화적 통합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받고 있지 못하고, 지방자치당국의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의 기관, 규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당국은 또한 외국인 배우자의 정부와도 직접 접촉할 수 있다.¹⁴⁷⁾

상당수의 국제결혼은 중개를 통해 미리 결정되고 이는 “메일로 신청한 신부”에 해당한다. 2005년에만 한국에 1000개 이상의 영업 중인 결혼중개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

142)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Trafficking in Persons*, D. A/HRC/4/24/Add.2, 14 r. 2007, r. 36.

143) CEDAW,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D. CEDAW/C/KOR/CO/7, 1 Aug. 2011, r. 23().

144)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Trafficking in Persons*, D. A/HRC/4/24/Add.2, 14 r. 2007, r. 37.

145)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Trafficking in Persons*, D. A/HRC/4/24/Add.2, 14 r. 2007, r. 38.

146)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Trafficking in Persons*, D. A/HRC/4/24/Add.2, 14 r. 2007, r. 41.

147)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Trafficking in Persons*, D. A/HRC/4/24/Add.2, 14 r. 2007, r. 42.

되는데 이러한 결혼중개업체의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사업체로 등록된다. 국제결혼중개업소에 의한 절차는 사진, 면담, 우편 신청, 비디오 파일,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패키지여행, 종교단체를 통한 집단결혼 등 다양하다. 업체들은 양측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제결혼중개업체는 한국 남성을 위해 미화 약 10,000불이 드는 다양한 결혼 패키지를 제공한다. 외국인 아내들은 한국을 향하는 신청과정 동안 한국과 그 전통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종종 피해를 본다. 이들은 종종 한국말을 하지 못하고 한국에 도착할 때 적절한 통역이 제공되지 못한다.¹⁴⁸⁾ 결혼중개업체들은 외국인 배우자들로부터 입국비자와 여권을 압수하고 같은 국적의 여성들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이혼을 하면, 몇몇 경우에는 이 업체들을 통하여 고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지기도 한다.¹⁴⁹⁾ 국제결혼중개업체들과 개인중개업자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수년간 제기되어 왔다.¹⁵⁰⁾

외국인 여성 배우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 많은 경우 남편이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고 그들 자신이 남편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하여야만 하였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변부 노동시장에 속하게 된다. 정식적인 언어훈련 없이 외국인 아내들은 다른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값싼 노동력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결혼의 또 다른 불안 요소는 여성 이주 배우자의 법적 거주 지위가 전적으로 한국인 남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들은 가정 온갖 종류의 가정폭력에 노출되게 된다.¹⁵¹⁾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에도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외국인 여성 배우자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남성 배우자의 잘못과 책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여성 단체들은 국제결혼과정 동안, 결혼중개업체와 결혼중개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기와 잘못된 정보의 고의적 제공의 많은 경우들에 대하여 우려를 하여왔다.¹⁵²⁾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남편이나 국제결혼중개업자에 의하여 범해될 침해가능성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며, 한국사회에서의 그들의 통합을 막는 다양한 장애에 직면한다.¹⁵³⁾ 외국인 여성이 결과적으로 결혼 및 착취의 목적으로 한국으로 인신매매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국제결혼에서는 가정폭력이 널리 퍼져있다.¹⁵⁴⁾

148)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D. HRC/4/24/Add.2, 14 r. 2007, r. 43.
 149)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D. HRC/4/24/Add.2, 14 r. 2007, r. 44.
 150)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D. HRC/4/24/Add.2, 14 r. 2007, r. 47.
 151)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D. HRC/4/24/Add.2, 14 r. 2007, r. 45;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CE CR/C.12/KOR/CO/3, 20 e er 2009, r. 11.
 152)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D. HRC/4/24/Add.2, 14 r. 2007, r. 46.
 153)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D. CERD/C/KOR/CO/1, 17 A g 2007, r. 17.
 154)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D. HRC/4/18/Add.1, 10 e er 2007, r. 46.

개정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관리지침 제333호(1999. 8. 1)'에 따라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남성이든 여성이든 체류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¹⁵⁵⁾ 2006년 5월부터는 한국 국적법에 따라 외국인 아내는 5년 대신 2년간의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후에는 한국 국적취득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 신청에는 남성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는 한국인 남성배우자에게 유리한 또 하나의 불평등이다.¹⁵⁶⁾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은 귀화 신청 접수의 전제조건이 되는 남편의 도움이 없을 경우, 또한 자녀가 없을 경우에, 한국 국적을 부여받는 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¹⁵⁷⁾

한국정부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그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문화적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 제도를 만들어 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외국인 아내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한다.¹⁵⁸⁾ , 가적으로 외국인 여성들의 한국사회에서의 통합을 위하여 한국과 한국 전통에 대한 적절한 정보 한국어 강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 적절한 조치를 하여 한다.¹⁵⁹⁾

한국은 과도한 비용, 자기가 한국인에 대한 정보의 미제공, 그리고 신분증 여행증명서의 수와 은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활동을 제한하여 한다.¹⁶⁰⁾ 한국은 결혼 중개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을 신설하고, 외국인 여성을 결혼 중개업자나 그 자의와 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적인 정책 조치를 개발하여 한다.¹⁶¹⁾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개인중개업자들로 인한 피해자들은 인신매매의 피해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데는 비공개로 되어 한다.¹⁶²⁾ 한국은 외국인 여성들을 결혼 중개업자, 인신매매업자들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대한 법의 과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기타 조치들을 하여 한다.¹⁶³⁾

155) *Re Bunge et al. v. Korea*, D. CEDAW/C/KOR/CO/6, 10 Ag 2007, r. 21.
 156) *Re Bunge et al. v. Korea*, D. A/HRC/4/24/Add.2, 14 r. 2007, r. 39.
 157) *Re Bunge et al. v. Korea*, D. A/HRC/4/24/Add.2, 14 r. 2007, r. 40.
 158) CEDAW,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D. CEDAW/C/KOR/CO/7, 1 Ag 2011, r. 26.
 159) *Re Bunge et al. v. Korea*, D. A/HRC/4/24/Add.2, 14 r. 2007, r. 63.
 160) CER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D. CERD/C/KOR/CO/1, 17 Ag 2007, r. 17; *Re Bunge et al. v. Korea*, D. A/HRC/4/24/Add.2, 14 r. 2007, r. 65.
 161) CEDAW,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D. CEDAW/C/KOR/CO/6, 10 Ag 2007, r. 22.
 162) *Re Bunge et al. v. Korea*, D. A/HRC/4/24/Add.2, 14 r. 2007, r. 65.
 163) CEDAW,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D. CEDAW/C/KOR/CO/7, 1 Ag 2011, r. 26.

한국은 가정폭력에 관한 법 을 강화하고, 이 법 이 사법제도에 대한 성을 포함하는 이주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한다.¹⁶⁴⁾ 자의 해에 대해 할 실행 가능한 구제방법을 외국인 여성에게 제공하고, 구제절 를 는 동 이들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가하여 한다. 나아가 한국은 외국인 여성에게, 가정폭력 으로부터의 보호와 그 방지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조치들을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와 해구제방법을 려주어 하고,¹⁶⁵⁾ 이를 위하여 의식 제고 인을 실시하여 한다.¹⁶⁶⁾ 외국 피해자는 경 서와 법정에서 적절한 통역에 할 수 있어 한다. 한국 정부는 여성의 라인을 통한 통역서비 를 확대하여 만 한다.¹⁶⁷⁾

한국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화신청 요 을 화시 한다. 한국인 성과 자 를 가진 이주여성은 그 결 상태와 무관하게 거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¹⁶⁸⁾ 한국은 외국인 여성 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한국인 의 전적인 책사유로 인하여 결 이 에 이 게 된 경 가 아니라고 하 라도, 외국인 여성 자가 이 은 거하게 된 경 에 이들의 법적 거주 자 이 보 장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 한다.¹⁶⁹⁾

한국은 여성 협약 제9조에 따라 한국 국적을 하기 위한 요 들에 관한 모 적인 조항들을 제하기 위하여 국적에 관한 법 을 수정하여 한다.¹⁷⁰⁾

5. 이주아동

한국에서는 다문화 혹은 이주배경을 가졌거나 북한으로부터 온 아동, 난민아동 등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 조치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하여 복합적인 형태의 차별이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다.¹⁷¹⁾

Re Kre, D . CEDAW/C/KOR/CO/7, 1 Ag 2011, r . 23().

164) H n Rg C n , *Re r e W r ng Gr n e n e r e r d Re e Re Kre*, D . A/HRC/8/40, 29 2008, r . 64.32.

165) CEDAW, *C n dng e n e C ee n e E n n D r n n g n W e n Re Kre*, D . CEDAW/C/KOR/CO/6, 10 Ag 2007, r . 22; rge B ne, *Re r e e R r e r n e n r g gr n n e Re Kre*, D . A/HRC/4/24/Add.2, 14 r . 2007, r . 64.

166) CEDAW, *C n dng e n e C ee n e E n n D r n n g n W e n Re Kre*, D . CEDAW/C/KOR/CO/7, 1 Ag 2011, r . 21(d).

167) rge B ne, *Re r e e R r e r n e n r g gr n n e Re Kre*, D . A/HRC/4/24/Add.2, 14 r . 2007, r . 64.

168) rge B ne, *Re r e e R r e r n e n r g gr n n e Re Kre*, D . A/HRC/4/24/Add.2, 14 r . 2007, r . 62; CE CR, *C n dng e r n e C ee n E n n*, *nd C r Rg*, D . CE CR/C.12/KOR/CO/3, 20 e er 2009, r . 11.

169) CERD, *C n dng e r n e C ee n e E n n R D r n n*, D . CERD/C/KOR/CO/1, 17 Ag 2007, r . 17.

170) CEDAW, *C n dng e n e C ee n e E n n D r n n g n W e n Re Kre*, D . CEDAW/C/KOR/CO/7, 1 Ag 2011, r . 27.

171) CRC, *C n dng e 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KOR/CO/3-4, 2 Fe r r 2012, r . 28.

출생등록이 난민과 난민신청자, 비정규 이주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다.¹⁷²⁾

아동의 교육권의 문제가 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관련 인권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¹⁷³⁾ 이주 아동의 학교 출석률은 여전히 낮고, 자녀의 초중등 교육 이수를 부모에게 보장하도록 하는 한국의 법률이 한국의 국민이 아닌 부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¹⁷⁴⁾ 교육 및 사회보장 관련 법규가 이주아동,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복지와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¹⁷⁵⁾ 집단따돌림, 특히 외국 출신 아동들에 대한 집단따돌림의 가혹함과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¹⁷⁶⁾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들에 대한 강제퇴거 역시 특히 우려되는 문제이다. 혈통주의에 입각한 현행 국적법에 따라, 노동자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들은 한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어있다.¹⁷⁷⁾

한국의 법률은 그 영토 내에서 태어난 난민과 난민신청자 아동에게 법적 지위에 관한 증서를 제공하지 않고,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지위 보유자의 아동의 이러한 취약한 상황은 노동시장 접근에 제약이 있고 생계 지원이 부족한 그 부모의 상황 때문에 더욱 악화된다. 또한, 학교 입학이 부모(들)의 출입국 지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난민과 난민신청자의 아동이 교육 접근에 제한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난민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부재하다. 뿐만 아니라 난민 또는 난민신청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난민의 권리에 관한 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부족하다.¹⁷⁸⁾ 더욱이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하에서는 난민, 난민신청자, 그리고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이 구금될 수 있다. 그러한 구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아동에게는 부적합한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송환 명령의 집행이 지연될 경우 법적인 시한이 없는 그러한 구금에 대한 주기적이고 시의적절한 심의를 보장하는 법조항이 전무하다.¹⁷⁹⁾

한국은 인식향상, 대중 교 인을 포함하여, 약하거나 소수자 상 의 아동을 향한 적 태도를 절하고 방지하기 위한 모 조치를 하여 한다.¹⁸⁰⁾

172)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KOR/CO/3-4, 2 Fe r r 2012, r . 36.

173) rge B ne, Re r e e R r e r n e n rg gr n n
e Re K re , D . A/HRC/4/24/Add.2, 14 r. 2007, r . 56.

174)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15/Add.197, 18 r 2003, r . 68.

175)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15/Add.197, 18 r 2003, r . 58.

176)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KOR/CO/3-4, 2 Fe r r 2012, r . 62.

177) rge B ne, Re r e e R r e r n e n rg gr n n
e Re K re , D . A/HRC/4/24/Add.2, 14 r. 2007, r . 31.

178)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KOR/CO/3-4, 2 Fe r r 2012, r . 64.

179)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KOR/CO/3-4, 2 Fe r r 2012, r . 66.

180)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15/Add.197, 18 r 2003, r . 32; CRC, *C n dng er n e C ee n e*

한국은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합치되도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상관없이 모 아동에게 출생 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 한다.¹⁸¹⁾

아동권리협약에서 예정된 와 이, 아동의 최상의 이 은 그들의 지위를 관리하는 과 결정을 지 하여 한다. , 아동들이, 주로 교 과 의료 서비 에 대한 권과 관 된, 그들의 모 인권을 수 있도 모 노력을 기 여 한다.¹⁸²⁾ 한국 은 미 이주민의 자 를 포함한 이주아동이 실질적으로 교 에 하고 교 을 받 을 수 있도 보장하는 정책과 전 을 개발하고 하여 한다.¹⁸³⁾ 한국은 미 이 주노동자의 자 를 포함하여 모 이주아동에게 서비 에 대한 동 한 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도 국내법, 교 과 사회보장관 법을 개정하여 한 다.¹⁸⁴⁾ 한국은 집단따 에 대 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외국 출신 아동에 대하 여 한 관 을 기 여 하고, 집단따 을 감소하기 위한 활동에 아동의 여를 보 장하여 한다.¹⁸⁵⁾ 반 선언 행동계 에 관한 조치로서 한국 정부는 아동권리 협약과 관 하여 구체적인 조치와 로그 을 행하여 하고 아동권리협약 제29조 제1 항(교 의 목적) 관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 평을 고려하여 한다.¹⁸⁶⁾

한국은 민과 민신청자의 아동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영토 에서 태어 모 아동들이 할 수 있도 하여 한다. 또한 민신청자와 인도적 지위 보유자의 가 들에게 분한 재정적 사회적 원조를 제공하고 그러한 상 의 아동이 한국의 국민 과 동 한 교 성을 제공받도 보장하여 한다. 어 한국은 공무원들에게, 민과 민신청자를 하는 이들에게, 민의 권리에 관한 한 을 제공 하여 한다.¹⁸⁷⁾ 한국은 민, 민신청자, 그리고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의 구금을 가 한다. 의 경 , 그러한 상 의 아동이 가능한 최상의 정도로 아동의 권리에 민감하며 권리를 존중하고 시의적절한 정기적 사와 명확하게 정된 시한을 따 는 시설에 수용되도 보장하여 한다.¹⁸⁸⁾

Rg e C d, D . CRC/C/KOR/CO/3-4, 2 Fe r r 2012, r . 29().
 181)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KOR/CO/3-4, 2 Fe r r 2012, r . 37.
 182) rge B ne, Re r e e R rer n e nrg gr n n e Re Kre , D . A/HRC/4/24/Add.2, 14 r. 2007, r . 66.
 183)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15/Add.197, 18 r 2003, r . 69.
 184)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15/Add.197, 18 r 2003, r . 59.
 185)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KOR/CO/3-4, 2 Fe r r 2012, r . 63(e).
 186)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15/Add.197, 18 r 2003, r . 33.
 187)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KOR/CO/3-4, 2 Fe r r 2012, r . 65.
 188) CRC, C n dng er n e C ee n e Rg e C d, D . CRC/C/KOR/CO/3-4, 2 Fe r r 2012, r . 67.

6. 난민

난민 신청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이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의 지연으로 인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발효된 이후 제한된 수의 난민 신청자들만이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다.¹⁸⁹⁾ 즉 장기간에 걸친 난민신청처리절차의 심사기간으로 인하여 난민신청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한국의 난민인정비율은 지극히 낮다.¹⁹⁰⁾ 개인, 특히 난민신청자가 고문 받을 수 있는 장소로 강제되거나 혹은 추방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¹⁹¹⁾

한국은 1951년 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를 이행하고, 국제 민법에 부합하도록 민인정절 를 개선하여 한다.¹⁹²⁾ 민과 민신청자에 관한 한국법은 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기타 인된 국제기 에 따라 도되어 한다. 민지위인정절 가 공정하고 신 하게 이루어 한다.¹⁹³⁾ , 한국은 () 출 국관리공무원의 증원을 포함하여, 개정된 출 국관리법과 그 시행 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 () 민절 를 표 화하는 것, () 민과 민신청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 을 통하여 민지위인정의 사기간을 이기 위하여 은 노력을 기 여 한다.¹⁹⁴⁾ 또한 민신청자와 인도적 보호를 부여받은 사 들이 업할 수 있어 하고, 한국사회에서 민들의 통합을 진시 기 위한 포 적인 조치들이 되어 한다.¹⁹⁵⁾ 한국은 한국정부의 관할권 지역 으로 국민 또는 외국인의 방, 또 는 범죄인인도를 결정할 협약 제3조의 요 들이 적용되도 보장하여 한다.¹⁹⁶⁾

189) CERD, *C n dng er n e C ee n e E n n R D r n n*, D . CERD/C/KOR/CO/1, 17 A g 2007, r . 10.

190) CE CR, *C n dng er n e C ee n E n* , nd C r Rg , D . CE CR/C.12/KOR/CO/3, 20 e er 2009, r . 9.

191) CA , *C n n nd re end n e C ee g n r re*, D . CA /C/KOR/CO/2, 25 2006, r . 12.

192) H n Rg C n , *Re r e Wr ng Gr n e n er er d Re e Re Kre* , D . A/HRC/8/40, 29 2008, r . 64.30.

193) CERD, *C n dng er n e C ee n e E n n R D r n n*, D . CERD/C/KOR/CO/1, 17 A g 2007, r . 10.

194) CE CR, *C n dng er n e C ee n E n* , nd C r Rg , D . CE CR/C.12/KOR/CO/3, 20 e er 2009, r . 9.

195) CERD, *C n dng er n e C ee n e E n n R D r n n*, D . CERD/C/KOR/CO/1, 17 A g 2007, r . 10.

196) CA , *C n n nd re end n e C ee g n r re*, D . CA /C/KOR/CO/2, 25 2006, r . 12.